

발 간 등 록 번 호

71-6410000-001085-01



2021 경기도 장애인 학대·차별 현황보고서



목차

용어 설명	9
장애인학대 및 차별 사례지원 절차	18
I. 사업개요	23
1. 사업 근거 및 개요	25
2. 사업 수행기관	26
II. 주요현황	27
제1장 신고접수 분석	29
제2장 장애인학대 사례 분석	35
제3장 장애인차별 사례 분석	59
제4장 장애인 인권증진 사업	63

목차

Ⅲ. 피해장애인 주요 지원사례	71
1. 신체적 학대(폭행)	72
2. 정서적 학대	74
3. 성적 학대(성희롱, 추행 등)	76
4. 경제적 착취(횡령, 노동착취 등)	79
5. 유기·방임	81
부록	83
1.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업무소개 및 현황	84
2. 경기도 내 인권 관련 기관 안내	88
3. 경기도 내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현황	89
4.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제도	90



표 목차

[표 1-1] 2021년 신고접수 현황 30

[표 1-2] 월별 신고접수 현황 31

[표 1-3] 시·군별 학대의심사례 신고접수 현황 32

[표 1-4] 신고접수 방법 현황 33

[표 1-5] 신고접수 경로 현황 34

[표 2-1] 장애인학대 의심 신고 건수 현황 36

[표 2-2] 장애인학대 의심 사례 조사 및 실시율 현황 36

[표 2-3] 사례판정 현황 37

[표 2-4] 상담 및 지원 현황 38

[표 2-5] 2021년 신고접수 현황 39

[표 2-6] 모니터링 현황 40

[표 2-7] 학대 사례 현황 41

[표 2-8] 피해장애인 성별 현황 42

[표 2-9] 피해장애인 연령 현황 43

[표 2-10] 피해장애인 장애 유형 현황 44

[표 2-11] 피해장애인 장애 정도 현황 45

[표 2-12] 피해장애인 거주 형태 현황 46

[표 2-13] 피해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 현황 47

[표 2-14] 학대행위자 성별 현황 48

[표 2-15] 학대행위자 연령 현황 49

[표 2-16]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 현황 51

[표 2-17]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동거 여부 현황 53

[표 2-18] 학대행위자 신고의무자 여부 현황 54

[표 2-19] 학대행위자 신고의무자별 현황 55

[표 2-20] 학대 발생 장소 현황 56

[표 3-1] 장애인차별 신고접수 현황 60

[표 3-2] 장애인차별 상담 및 조사 현황 60

[표 3-3] 장애인차별 유형 현황 61

[표 3-4] 장애인차별 처리결과 현황 62

그래프 목차

[그래프 1-1] 2021년 신고접수 현황	30
[그래프 1-2] 신고접수 현황 비교 : 2020, 2021	30
[그래프 1-3] 월별 신고접수 현황	31
[그래프 1-4] 시·군별 학대의심사례 신고접수 현황	32
[그래프 1-5] 신고접수 방법 현황	33
[그래프 1-6] 신고접수 경로 현황	34
[그래프 2-1] 장애인학대의심 사례 조사 및 실시율 현황	36
[그래프 2-2] 사례판정 현황	37
[그래프 2-3] 학대의심사례 현황	38
[그래프 2-4] 상담 및 지원 횟수	38
[그래프 2-5] 사례별 상담 및 지원 횟수	38
[그래프 2-6] 학대의심사례 현황	39
[그래프 2-7] 종결사례 현황	39
[그래프 2-8] 당해 연도 사례종결률 현황	39
[그래프 2-9] 모니터링 실시 현황	40
[그래프 2-10] 모니터링 지원 현황	40
[그래프 2-11] 장애인학대 유형 분석	41
[그래프 2-12] 피해장애인 성별 현황	42
[그래프 2-13] 피해장애인 연령 현황	43
[그래프 2-14] 피해장애인 장애 유형 현황	44
[그래프 2-15] 피해장애인 장애 정도 현황_1	45
[그래프 2-16] 피해장애인 장애 정도 현황_2	45
[그래프 2-17] 거주 형태 현황	46
[그래프 2-18] 거주 형태_남부	46
[그래프 2-19] 거주 형태_북부	46
[그래프 2-20] 피해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 현황	47
[그래프 2-21] 수급자 여부_남부	47
[그래프 2-22] 수급자 여부_북부	47
[그래프 2-23] 학대행위자 성별 현황	48
[그래프 2-24] 학대행위자 성별_남부	48

그래프 목차

[그래프 2-25] 학대행위자 성별_북부	48
[그래프 2-26] 학대행위자 연령 현황	49
[그래프 2-27]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_가족 및 친인척	52
[그래프 2-28]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_신고의무자	52
[그래프 2-29]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_비신고의무자	52
[그래프 2-30]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동거 여부 현황	53
[그래프 2-31] 동거 여부_남부	53
[그래프 2-32] 동거 여부_북부	53
[그래프 2-33] 신고의무자 여부 현황_1	54
[그래프 2-34] 신고의무자 여부 현황_2	54
[그래프 2-35] 학대행위자 신고의무자별 현황	55
[그래프 2-36] 학대 발생 장소	57
[그래프 3-1] 장애인차별 상담 및 조사 현황	60
[그래프 3-2] 장애인차별 유형 현황	61
[그래프 3-3] 장애인차별 처리결과 현황	62

그림 목차

[그림 1] 도(道)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학대 사례지원 체계도	21
[그림 2] 도(道)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차별 사례지원 체계도	22



2021 경기도 장애인 학대·차별 현황보고서

용어설명

장애인학대 및 차별 사례지원 절차

용어 설명

기본개념

◆ 장애인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 장애유형

장애유형은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크게 분류되고, 세부적으로 15가지 유형으로 나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구분		장애유형
신체적 장애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주요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	정신장애

◆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그리고 그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 장애 정도

2019년 7월부터 1~6급의 등급으로 장애 정도를 구분하던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어 현재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함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는 장애인학대 대응 전문기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수립 등의 역할을 수행
-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조사, 응급보호, 사후관리 등의 장애인학대 대응 업무와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

장애인학대

◆ **장애인학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

구분	개념
신체적 학대	폭행, 상해, 감금 등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정서적 학대	협박, 괴롭힘, 모욕 등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성적 학대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장애인에 대한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장애로 인한 취약성을 이용한 재산·노동력의 착취, 재산적 권리의 침해 등 장애인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히는 행위
유기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장애인과의 관계를 단절하거나 장애인을 버리는 행위
방임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장애인의 기본적인 보호나 치료 등을 소홀히 하거나 장애인이 자신에 대한 보호·치료 등을 포기·거부하는 행위

- 중복 학대: 하나의 학대 사건에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의 여러 학대 유형이 동반되는 경우
- 노동력 착취: 경제적 착취의 대표적 행위 중 하나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를 가로채는 등 피해자의 노동력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
- 보호의무자: 친권자, 민법에 따른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감독하는 사람

◆ **피해장애인**

학대피해를 입은 장애인

◆ **학대행위자**

장애인학대 행위를 한 사람

◆ **재가**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경우를 말함

◆ **집단이용시설**

다수의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거주시설 및 이용시설 등을 말함. 대표적으로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정신건강 증진시설, 교육기관, 미신고시설 등이 이에 해당

장애인차별

◆ 장애인차별

구분	개념
직접차별	장애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간접차별	형식상으로는 불리하게 대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광고에 의한 차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하거나, 이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장애인차별 유형

구분	개념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관계에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경우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의 개조와 같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등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의 입학·전학을 거부·강요하는 경우 모든 교육 활동에 있어 장애 학생의 참여를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경우 교육 활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등
재화/용역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비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의를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는 경우 등 <p>※ 재화와 용역 : 재화는 가치를 지닌 물품을 의미하고, 용역은 가치를 지닌 서비스를 의미</p>
보험/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가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경우 등(금전 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 가입 등)
시설물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물의 소유·관리자가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경우 시설물의 이용과 관련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등
이동/교통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경우 등
정보 접근/의사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법인·공공기관 등에서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접근하는데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등
문화/예술/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관광·체육 시설의 사업자·관리자가 장애인이 해당 활동을 참여하면서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경우 등

구분	개념
사법/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등이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는 경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에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는 경우 등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부성권, 성 등: 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입양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성에 관한 권리 및 이를 표현하고 누릴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받지 못한 경우 등 • 가족, 가정 및 복지시설: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에서 교육권, 재산권, 거주·이전, 외부와의 소통 등에 있어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지 않으며, 장애인의 동의 없이 과중한 역할이나 불리한 합의를 강요하거나 장애인의 외모·신체를 공개하는 경우 등 • 건강권: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이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경우 등 •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장애가 있는 여성·아동임을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등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통계방식에 따라 내용 정리

◆ 장애인차별 지원(처리결과)

구분	개념
개선 요구(행정처분 요구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가 된 기관에 대한 지역기관의 직접적 개선 요구(종사자 교육, 지침 변경 등)나 소관 행정청에 문제가 된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 관리 감독기관에 문제가 된 기관의 감사 요구, 신고, 진정이나 민원 제기(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외) 등을 말함
고발·수사 의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 사건을 고발하거나,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별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은 당사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진정 서류 작성을 지원하거나, 직접 진정하는 경우
법률상담 및 절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차별)사례와 관련된 법률상담을 하거나,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절차 안에서 절차지원을 하는 경우
소송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 혹은 법률구조 기관 등을 통하여 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민·형사·행정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대리인을 선임하여 지원하는 경우
조정·중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자 및 관련된 사람들을 조정 및 중재하여 문제를 해결한 경우
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상담, 유관기관 정보 문의와 같은 정보를 제공한 경우
조사 중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중 기관의 개입 없이 해결된 경우
정서적 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에 대한 불만, 하소연, 고충 등을 호소하는 당사자 및 내담자에 대한 위로나 지지를 한 경우
타 기관 및 자원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에서 직접 지원을 하지 않고 타 기관 및 자원을 연계하는 경우
당사자 대응 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접수 후 지원과정에서 당사자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
지원대상 아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자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타 기관에서 이미 지원하는 등 지원이 불필요한 경우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처리한 경우

신고접수

◆ 신고접수

장애인학대(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포함)가 의심되는 사례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공식적으로 알게 되는 것

◆ 장애인학대 의심사례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

◆ 일반사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신고 중 차별, 개인적 분쟁, 정보 문의 등 장애인학대가 의심되는 요소가 없는 사례

◆ 인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이 신고 이외의 경로로 장애인학대 사건을 알게 된 경우

◆ 연계

타 기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제외한 외부기관)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학대의심사례에 대한 지원을 함께 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

◆ 이관

특정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사례가 피해자의 거주지 이전, 기관 간 협의 등으로 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넘어가는 것. 사례에 대한 관리 권한은 이관받은 기관으로 넘어감

◆ 신고의무자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

◆ 비신고의무자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신고의무가 없는 사람이 장애인학대를 신고한 경우 이들을 비신고의무자라고 함. 본인, 가족 및 친인척, 타인, 신고의무자가 아닌 기관종사자, 파악 안됨으로 분류함

학대조사 및 사례판정

◆ 학대조사

신고 접수된 장애인학대 의심사례가 장애인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모든 형태의 조사과정. 이 과정에서 피해자 및 학대행위자 등에 대한 면담, 증거 및 입증 서류 확인이 이루어지고 필요한 경우 피해자 응급조치가 동시에 실시됨

◆ 응급조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장애인학대 현장에 출동했을 때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여 안전한 곳에서 일시 보호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이송하여 검사, 치료를 받게 하는 조치(「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제1항 및 제2항)

◆ 사례판정

신고 접수된 사례가 장애인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절차. 장애인학대에 해당하는 사례는 학대사례로 판정하고, 장애인학대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는 잠재위험사례와 비학대사례로 판정

구분	개념
학대사례	• 학대조사 결과 장애인에 대하여 학대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사례
비학대사례	• 학대조사 결과 장애인학대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
잠재위험사례	• 학대조사 결과 피해가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명확히 학대로 판정할 수 없는 사례로 향후 학대 발생 가능성이 있어 학대 예방을 위해 사후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례

◆ 사례회의

신고접수된 사례가 장애인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고, 사례의 내용을 내부적으로 공유·논의하여 사례 지원에 관한 다양한 사항을 결정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회의

◆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제2항 제4호에 따라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위원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사례회의에서 학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유보된 사례에 대하여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들이 의견을 교환·논의하여 사례와 관련된 의사를 결정하는 회의

◆ 재학대사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접수되어 종료되었던 사례 중 다시 학대가 발생하여 신고되는 사례

◆ 장애인학대 지속 기간

최초 장애인학대가 시작된 시점부터 발견 시점까지의 기간

◆ 장애인학대 발생빈도

장애인학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횟수

피해자 등 지원

◆ 피해장애인 지원

학대사례로 판정한 후 피해자에 대한 학대 후유증 감소, 학대 재발 방지, 피해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으로 의료지원, 심리지원, 거주지원, 사법지원, 복지지원, 교육지원, 중재지원, 진정 지원, 상담지원, 기타지원으로 분류함

- 의료지원: 학대로 인하여 발생한 질환 등의 치료와 피해 회복을 의료적으로 돕는 것으로 응급의료조치, 검진 또는 진단, 통원 및 입원 치료 등을 말함
- 심리지원: 피해장애인의 심리·정서적 회복을 위하여 자격을 가진 전문가에게 심리평가 및 진단, 심리 상담 및 치료 등을 받게 하는 것을 말함
- 거주지원: 피해장애인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거주공간 마련에 관한 지원으로 응급보호, 임대주택과 같은 재가에서의 거주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와 같은 거주시설에서의 거주지원 등이 있음
- 사법지원: 학대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피해장애인이 입게 된 손해의 회복, 후견인 선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피해자 신뢰관계 동석 등 사법적인 절차와 관련된 지원을 말함
- 복지지원: 장애인등록 절차를 연계하거나, 공공 및 민간 영역의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피해장애인에 필요한 복지서비스와 자원을 연계하는 지원을 말함
- 교육지원: 피해 회복과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으로 피해자, 가족, 행위자, 관련자 대상의 학대 예방 교육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직접 실시하거나, 외부 자원을 연계하여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을 말함
- 중재지원: 피해장애인과 학대행위자가 법적절차로 가지 않고 당사자들 간의 분쟁을 조정하여 화해를 이끌어 내는 지원을 말함
- 진정지원: 피해장애인이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등과 같은 국가 기관에 진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피해장애인의 진정 과정을 돕거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직접 진정하는 지원을 말함
- 상담지원: 의료·심리·거주·사법·복지·교육·중재·진정 외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이뤄지는 정서적 지지, 진행 경과 안내 등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상담을 말함
- 기타지원: 어떤 유형에 포함되기 어려운 지원으로 피해자의 이동을 목적으로 지원하거나, 다수의 복합적인 지원을 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함

◆ 상담 및 지원

신고접수 이후부터 사례종결 전까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이 피해자, 가족, 행위자, 관련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형태의 지원을 통칭함

◆ 사례종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끝내는 것으로 사례종결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의 지원을 실시하지 않음

◆ 사후 모니터링

사례종결 이후 일정기간 동안 피해자의 안전과 학대 재발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관리 업무를 말함

◆ 개입종료

사례에 대한 개입을 완전히 마치는 것을 말함

장애인학대 및 차별 사례지원 절차

도(道)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 및 차별사례에 대해 상담·접수, 현장 조사(응급조치), 사례 회의(학대사례판정위원회 회의), 피해자 지원, 모니터링, 종결의 과정으로 기능을 수행함

사례지원 개요

사례지원이란 장애인 학대 의심사례 및 차별사례의 신고(상담)접수, 현장 조사, 응급조치, 피해자 등에 대한 회복 지원, 사후 모니터링 등 사례에 대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개입 절차 전반을 말함.

절차

장애인 학대의심사례 및 차별사례는 신고(상담)접수부터 개입종료까지의 절차로 진행.



장애인학대사례 외 잠재위험사례로 판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지원을 실시하지 않고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비학대사례로 판정한 경우 피해자 지원, 사후 모니터링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신고접수

누구든지 장애인학대를 알게 되면 장애인학대 신고번호(1644-8295)로 신고할 수 있음. 전국 18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신고를 받으며, 신고자와 가까운 위치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사례를 담당함. 2021년부터 전화 외에도 문자(SMS), 카카오톡으로 신고할 수 있음.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한 신고, 직접 기관을 방문하는 방문 신고 등도 가능함.

◆ 학대조사

신고접수를 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은 신고된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학대조사를 실시함.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애인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현장에 동행하여야 함. 현장에 출동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은 피해자 및 학대행위자 등 관련자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이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 조사나 질문을 실시함. 조사 시에는 피해장애인 및 관련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



조사 시 장애인학대와 관련 있는 자가 현장 조사를 거부

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은 학대조사 시 피해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음. 이때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으로 인도할 수 있고, 안전한 곳으로의 분리가 필요한 때에는 쉼터 등에서 보호할 수 있음.

◆ 사례판정

학대조사 이후 장애인학대사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의사 결정 회의인 사례회의를 개최하여 학대 여부를 판정함. 사례회의에서 판정이 어렵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를 통해 학대 여부를 판정할 수 있음.

◆ 피해자 등 지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학대 피해의 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실시함. 장애인학대사례로 판정되면 피해 장애인에게 확인된 피해 사실을 바탕으로 향후 지원과정 및 내용,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피해자 지원계획을 수립함.

사례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며 세부 내용으로는 의료지원, 심리지원, 거주지원, 사법지원, 복지지원, 교육 지원, 중재지원, 진정지원, 상담지원 등을 실시함.



◆ 사례종결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을 마치면 사례회의에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완료되었는지 평가하고, 사례종결 여부를 결정함. 사례회의에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 지원계획을 수정·변경하여 피해자 지원을 실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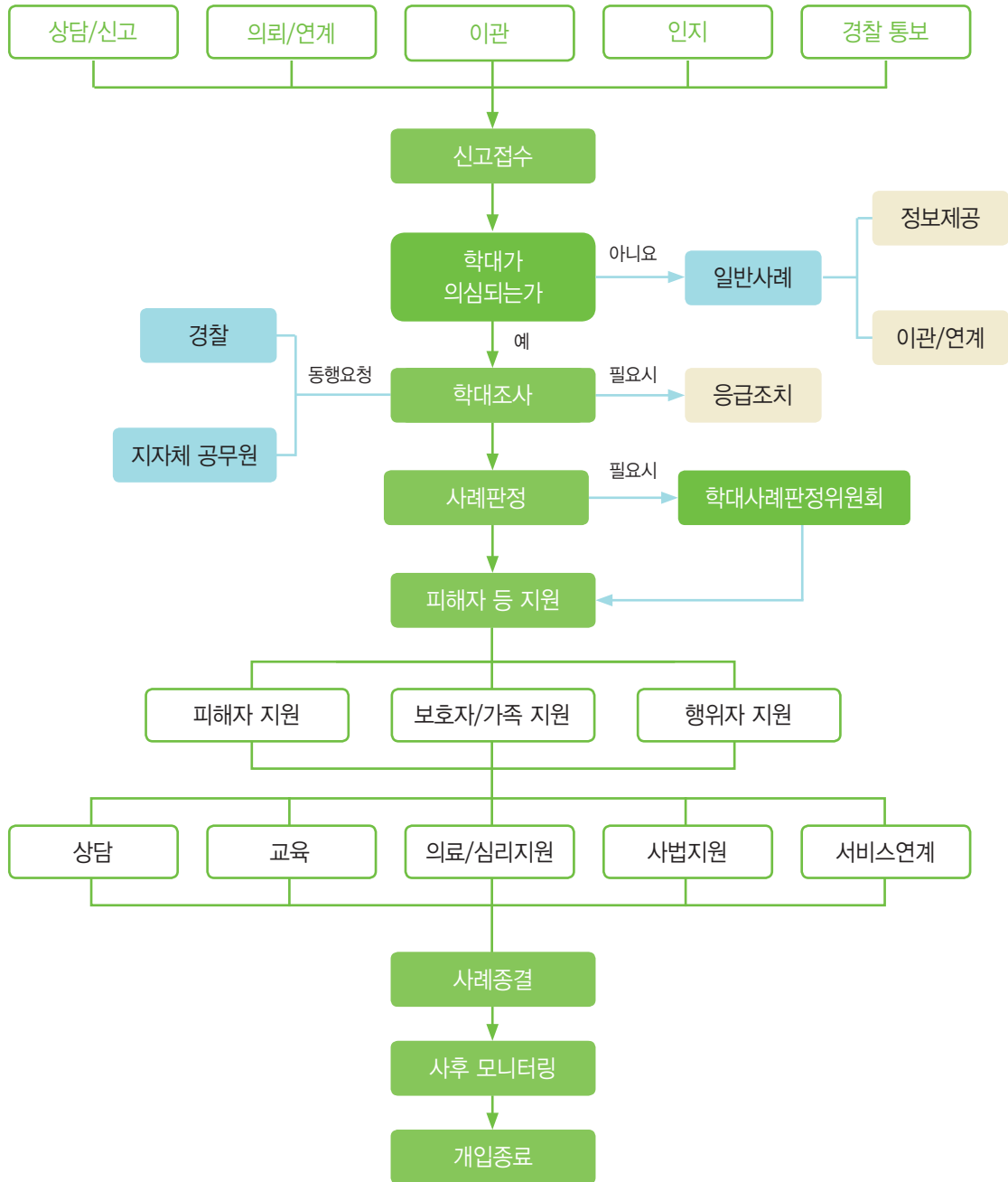
◆ 사후 모니터링

피해자 지원을 마치기로 결정하면 일정 기간 피해장애인의 재학대 발생 여부 및 안정적인 생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함.

◆ 개입종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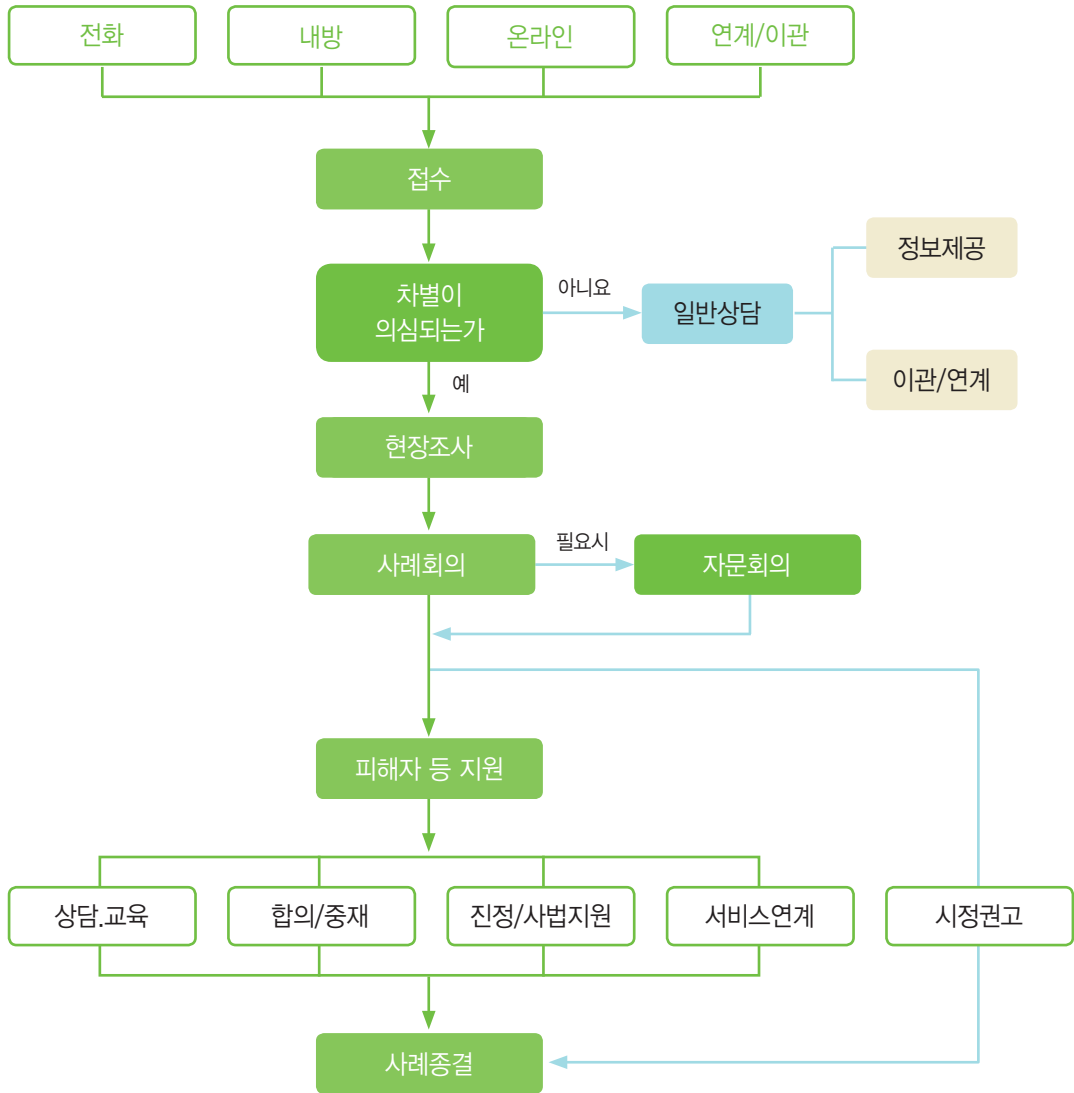
사후 모니터링 기간 내 재학대 등이 발생하지 않으면 사례의 개입을 최종적으로 종료함.

장애인학대 사례지원 절차



[그림 1] 도(道)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학대 사례지원 체계도

장애인차별 사례지원 절차



[그림 2] 도(道)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차별 사례 지원 체계도

I

2021 경기도 장애인 학대·차별 현황보고서

사업개요

1. 사업 근거 및 개요
2. 사업 수행기관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의 종합적인 지원을
 통한 장애인 권익옹호와 장애인차별을 예방하고 차별에 대한
 권리구제를 통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함

1. 사업 근거 및 개요

■ 설치 및 운영 사업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 59조의 11
-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사업안내 Ⅱ 권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_(당해년도)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리·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서_경기도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무처리지침_경기도
-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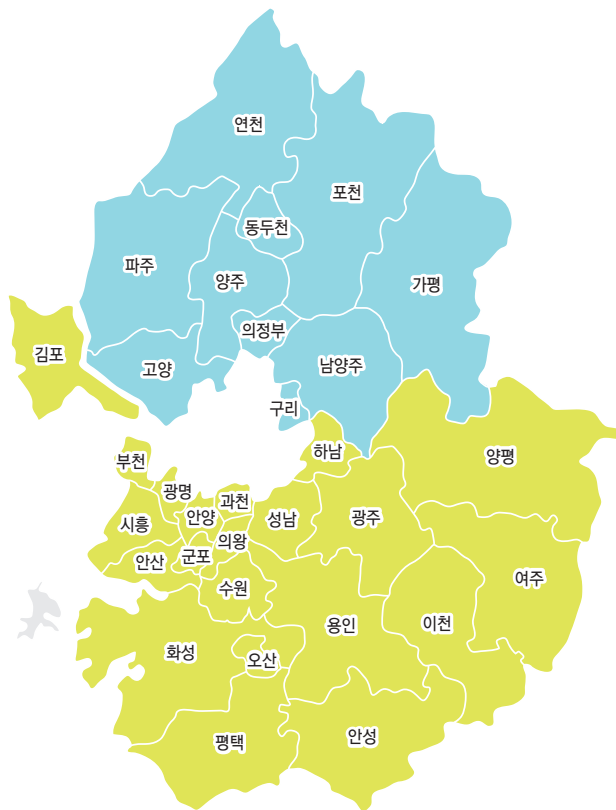
■ 사업개요

-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장 조사, 응급 보호
-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피해 회복지원(상담·교육, 고발, 서비스 연계 등)
- 장애인차별 상담 및 조사
-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실태조사
- 장애인 인권증진 및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예방 등 교육
-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 계획 시·군 이행사항 모니터링

2. 사업 수행기관

■ 기관 현황

구분	소계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 남부지역 관할)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 북부지역 관할)
위탁기간	3년	2022. 1. 1. ~ 2024. 12. 31.	
소재지	-	수원시	의정부시
운영인력	23명	13명(관장 1, 팀장 3, 직원 9)	10명(관장 1, 팀장 2, 직원 7)
예산액	1,548백만원	889백만원(국비 103, 도비 786)	659백만원(국비 103, 도비 556)



경기북부(10개 시군)

고양, 남양주, 파주, 의정부,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경기남부(21개 시군)

수원, 용인, 성남, 부천, 화성, 안산, 안양, 평택, 시흥, 김포, 광주, 광명, 군포, 하남, 오산, 이천, 안성, 의왕, 양평, 여주, 과천

II

2021 경기도 장애인 학대·차별 현황보고서

주요 현황

제1장 신고접수 분석

제2장 장애인학대 사례 분석

제3장 장애인차별 사례 분석

제4장 장애인 인권증진 사업

제 1 장

신고접수 분석

경기도 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2개소(이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 한다)는 장애인학대 신고 전화 1644-8295를 통해 장애인학대 및 차별 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내용이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면 '장애인학대 의심 사례'(이하 학대의심사례)로 분류하고 사례지원 절차에 따라 조사 및 사례 판정 등을 실시한다.

학대의심사례 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차별 사례, 장애인학대와 무관한 개인 간의 다툼이나 분쟁과 관련된 사례 등은 '일반사례'로 접수한다.

1. 전체 신고접수_학대, 차별, 일반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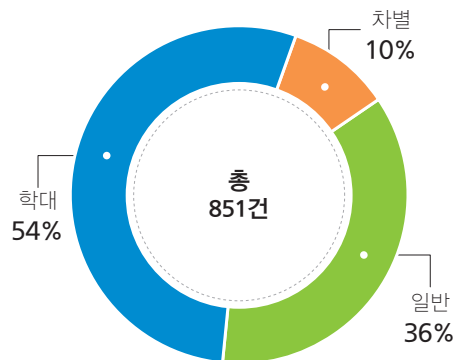
전체 신고 851건 중 학대의심사례 463건(54.4%), 일반사례 304건(35.7%), 차별 84건(9.9%) 순으로 전년도 신고 접수 813건 대비 38건(4%)이 증가하였다.

[표 1-1] 2021년 신고접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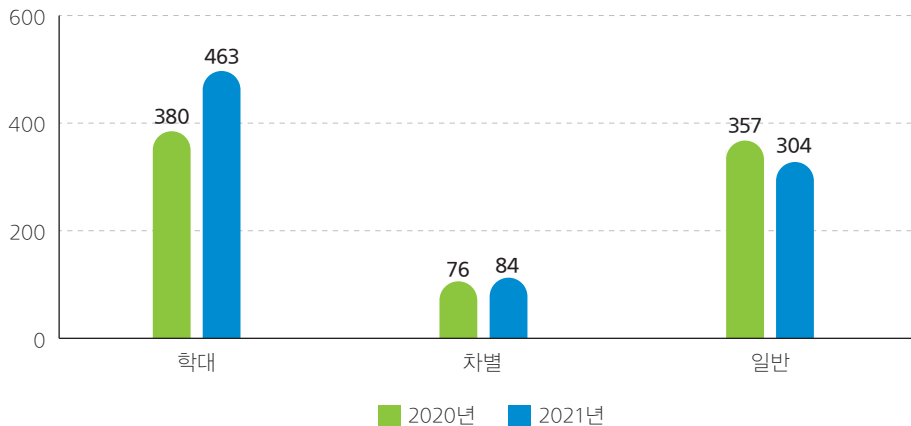
(단위: 건, %)

구분	학대	차별	일반	계
계	463(54.4)	84(9.9)	304(35.7)	851(100)
경기 남부	242(52.2)	61(13.1)	161(34.7)	464(100)
경기 북부	221(57.1)	23(5.9)	143(37.0)	387(100)

[그래프 1-1] 2021년 신고접수 현황



[그래프 1-2] 신고접수 현황 비교 : 2020, 2021



2. 월별 신고접수

월평균 신고접수 건은 71건이다. 그중 학대의심사례는 월평균 39건, 일반사례는 월평균 25건, 차별사례는 월평균 7건이 접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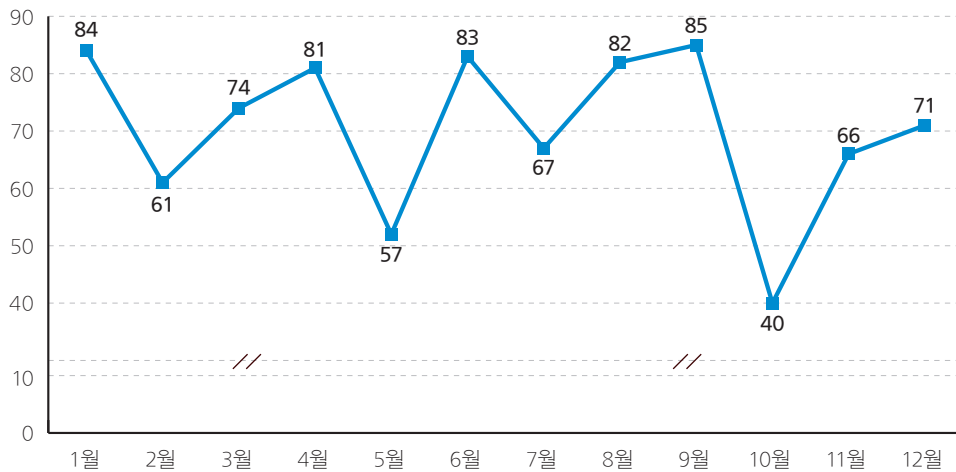
월별 신고접수현황을 보면 9월이 85건(9.9%), 1월이 84건(9.8%), 6월이 83건(9.7%) 순으로 신고접수 건수가 높다.

[표 1-2] 월별 신고접수 현황

(단위: 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학대	39	30	43	38	26	55	37	48	56	24	33	34	463
차별	5	7	11	10	6	3	7	3	5	5	12	10	84
일반	40	24	20	33	25	25	23	31	24	11	21	27	304
계	84	61	74	81	57	83	67	82	85	40	66	71	851

[그래프 1-3] 월별 신고접수 현황



3. 시·군별 학대의심사례 신고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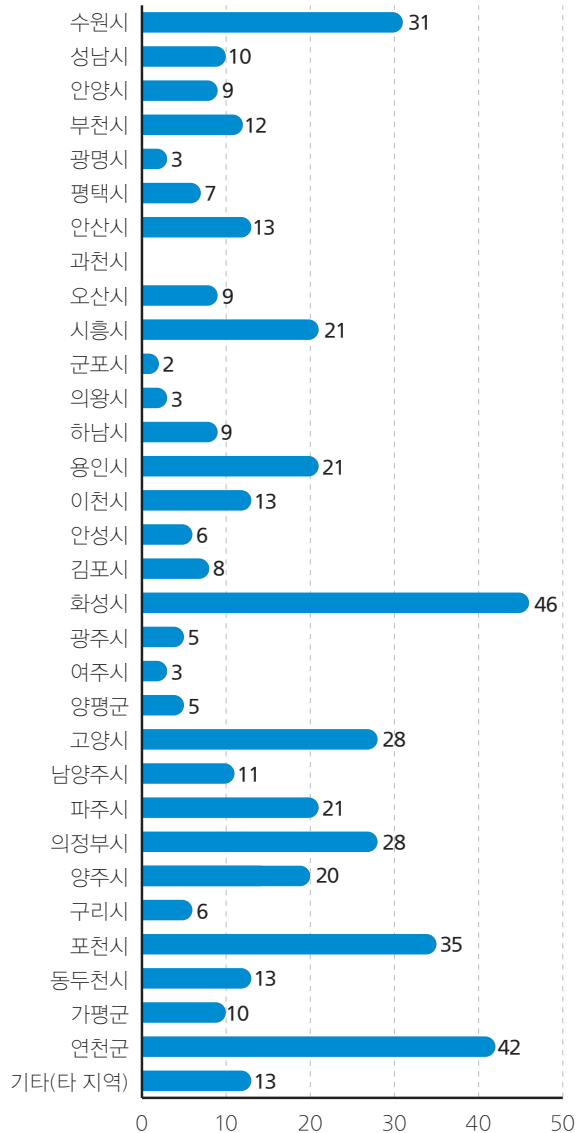
시·군별 학대의심사례 신고접수 현황은 화성시 46건(9.9%), 연천군 42건(9.1%), 포천시 35건(7.6%), 수원시 31건(6.7%) 순으로 신고가 많았다.

[표 1-3] 시·군별 학대의심사례 신고접수 현황

(단위: 건, %)

시·군	건수	비율
수원시	31	6.7%
성남시	10	2.2%
안양시	9	1.9%
부천시	12	2.6%
광명시	3	0.6%
평택시	7	1.5%
안산시	13	2.8%
과천시	0	0.0%
오산시	9	1.9%
시흥시	21	4.5%
군포시	2	0.4%
의왕시	3	0.6%
하남시	9	1.9%
용인시	21	4.5%
이천시	13	2.8%
안성시	6	1.3%
김포시	8	1.7%
화성시	46	9.9%
광주시	5	1.1%
여주시	3	0.6%
양평군	5	1.1%
고양시	28	6.0%
남양주시	11	2.4%
파주시	21	4.5%
의정부시	28	6.0%
양주시	20	4.3%
구리시	6	1.3%
포천시	35	7.6%
동두천시	13	2.8%
가평군	10	2.2%
연천군	42	9.1%
기타(타 지역)	13	2.8%
계	463	100%

[그래프 1-4] 시·군별 학대의심사례 신고접수 현황





4. 신고접수 방법

신고접수는 장애인학대 신고 전화 1644-8295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무실 번호로 신고하는 전화신고,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내방신고,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는 온라인신고, 문자, 팩스, 우편의 방법과 상담원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례를 알게 되어 접수하는 인지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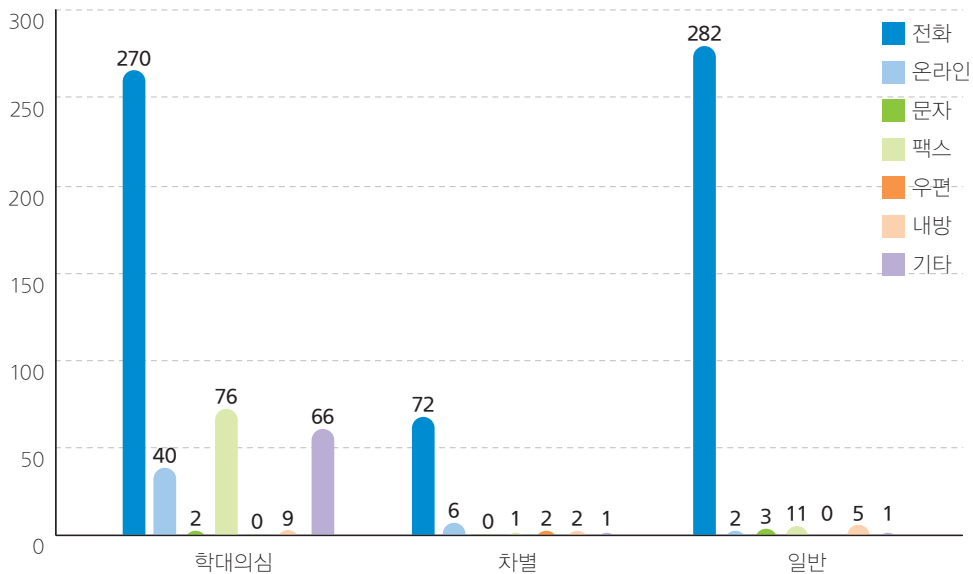
신고자는 전화로 가장 많이 신고했으며 이는 전체 신고의 73.3%인 624건이었다. 다음으로 팩스 신고가 88건 (10.3%), 기타가 68건(7.9%), 온라인 신고가 48건(5.6%), 내방 신고가 16건(1.8%) 순으로 신고 · 접수되었다.

[표 1-4] 신고접수 방법 현황

(단위: 건)

구분	전화	온라인	문자	팩스	우편	내방	기타	계
학대 의심	270	40	2	76	0	9	66	463
차별	72	6	0	1	2	2	1	84
일반	282	2	3	11	0	5	1	304
계	624	48	5	88	2	16	68	851

[그래프 1-5] 신고접수 방법 현황



5. 신고접수 경로

신고가 접수되는 경로는 개인이 학대의심사례를 신고하는 신고, 인지, 이관, 연계, 경찰통보다. 인지란 언론보도 등 상담원이 사례를 알게 되어 접수하는 방법이다. 경찰통보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4(장애인학대 등의 통보)에 따라 2020년 3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사법경찰관리가 장애인 사망 및 상해 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장애인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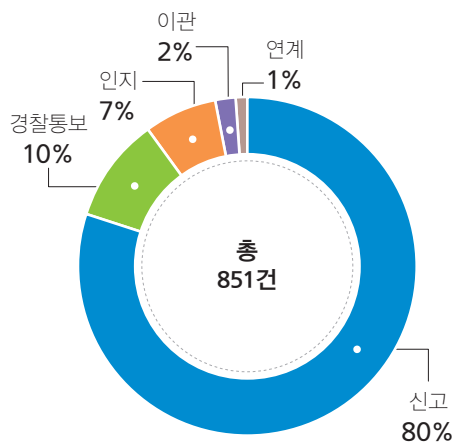
신고접수 경로를 보면 신고가 678건(79.6%)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경찰통보 86건(10.1%), 인지 63건(7.4%), 이관 19건(2.2%), 연계 5건(0.5%) 순이었다.

[표 1-5] 신고접수 경로 현황

(단위: 건)

구분	신고	인지	이관	연계	경찰통보	계
학대 의심	306	60	16	4	77	463
차별	82	1	1	0	0	84
일반	290	2	2	1	9	304
계	678	63	19	5	86	851

[그래프 1-6] 신고접수 경로 현황





제 2 장

장애인학대 사례 분석

장애인 학대 의심 신고 접수된 사례에 대하여 신고접수부터, 사례종결과 모니터링까지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이다.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 중 장애인 학대로 판정한 사례를 학대의 유형, 피해자의 특성, 행위자의 특성 등으로 심층 분석하였다.

1. 장애인학대 의심 사례지원 현황

1) 신고접수

[표 2-1] 장애인학대 의심 신고 건수 현황

(단위: 건)

구분	신고 건수
계	463
경기 남부	242
경기 북부	221

2) 학대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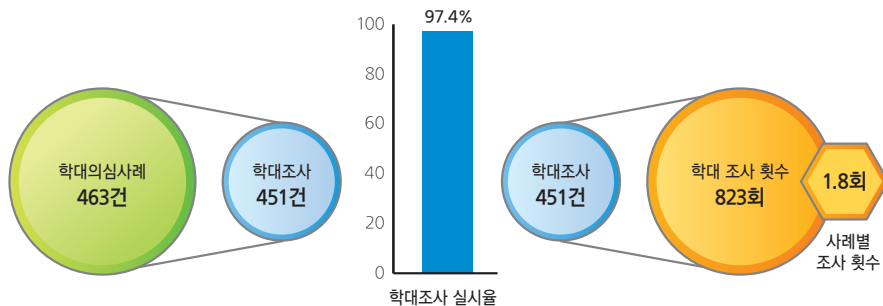
장애인학대 조사란 신고 접수된 사례의 피해장애인에게 장애인학대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를 말한다. 조사 시에는 피해장애인에 대한 면담, 학대행위자 등 관련자에 대한 면담, 증거와 피해 관련 서류를 확인하며, 필요 시 피해장애인에 대해 응급조치를 실시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학대의심사례는 모두 조사해야 하나 이미 경찰이나 유관 전문기관에서 조사 중이거나 조사를 완료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추가로 조사하는 것이 불필요한 때도 있다. 또한 피해장애인의 정보가 특정되지 않아 조사할 수 없는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다. 접수된 학대의심사례 463건 중 451건을 조사하였으며 조사실시율은 97.4%로 전년도(332건, 87.3%)와 비교했을 때 10.1% 증가하였으며, 학대 조사 횟수는 823건으로 사례별 평균 1.8회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2-2] 장애인학대 의심 사례 조사 및 실시율 현황

(단위: 건, %)

구분	학대의심사례	학대 조사	학대 조사 실시율	학대 조사 횟수	사례별 조사 횟수
계	463	451	97.4	823	1.8
경기 남부	242	228	94.2	346	1.4
경기 북부	221	219	99.1	477	2.2

[그래프 2-1] 장애인학대의심 사례 조사 및 실시율 현황



3) 사례판정

학대 조사를 마친 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학대 사례 여부를 판정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의사결정 회의인 사례 회의에서 장애인학대 사례, 잠재위험사례, 비학대사례 여부를 판정하고, 사례 회의에서 판정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학대 여부를 판정하고 있다.

장애인학대 사례는 학대 조사 결과 장애인에 대하여 학대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사례를 말한다. 잠재위험사례는 학대 조사 결과 피해가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명확히 학대로 판정할 수 없는 사례로 향후 학대 발생 가능성이 있어 학대 예방을 위해 사후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례를 말한다. 비학대사례는 장애인학대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를 말한다. 조사 중인 사례는 해당 연도에 신고접수 되었으나 학대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사례 판정을 하지 않은 사례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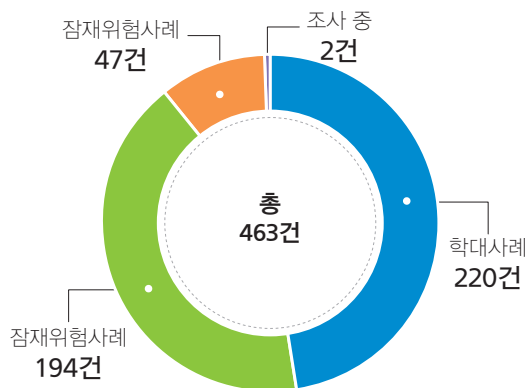
사례판정 결과, 학대의심사례 463건 중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220건으로 전체의 47.52%를 차지했으며, 비학대 사례는 194건(41.9%), 잠재위험사례는 47건(10.15%), 조사 중인 사례는 2건(0.43%)이었다. 장애인학대 사례는 전년도(187건) 대비 33건(17.6%) 증가했으며, 잠재위험사례는 전년도(34건)대비 13건(38.2%) 증가, 비학대 사례는 전년도(120건) 대비 74건(61.6%) 증가하였다.

[표 2-3] 사례판정 현황

(단위: 건)

구분	학대 사례	비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조사 중	계
계	220	194	47	2	463
경기 남부	126	89	25	2	242
경기 북부	94	105	22	-	221

[그래프 2-2] 사례판정 현황



4) 상담 및 지원

장애인학대 사례로 판정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을 실시하지만, 당사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면 비학대사례인 경우에도 일부 개입하여 당사자를 지원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상담 및 지원은 당해 연도에 접수된 사례 이외에 전년도에 접수되어 종결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도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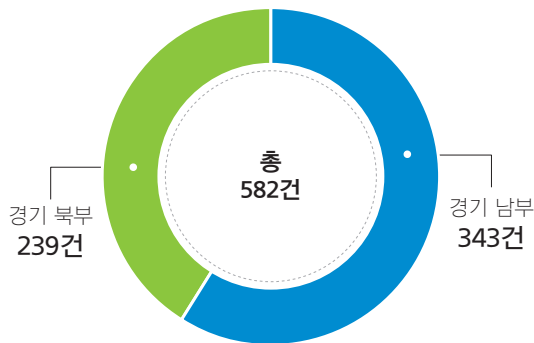
2021년 이전과 2021년에 접수된 학대의심사례에(582건) 대해 3,715회의 상담 및 지원을 실시하였고, 사례별 평균 6.38회 상담 및 지원이 이루어졌다.

[표 2-4] 상담 및 지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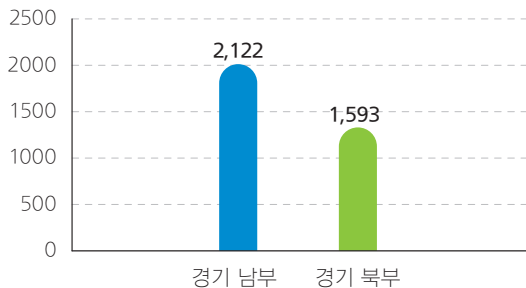
(단위: 건, %)

구분	2021년 이전		2021년		계		사례별 상담 및 지원 횟수
	학대의심 사례	상담 및 지원 횟수	학대의심 사례	상담 및 지원 횟수	학대의심 사례	상담 및 지원 횟수	
계	119	1,014	463	2,701	582	3,715	6.38
경기 남부	101	778	242	1,344	343	2,122	6.19
경기 북부	18	236	221	1,357	239	1,593	6.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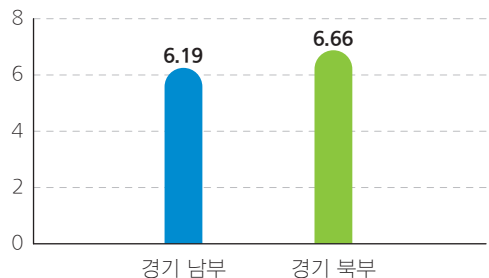
[그래프 2-3] 학대의심사례 현황



[그래프 2-4] 상담 및 지원 횟수



[그래프 2-5] 사례별 상담 및 지원 횟수



5) 사례종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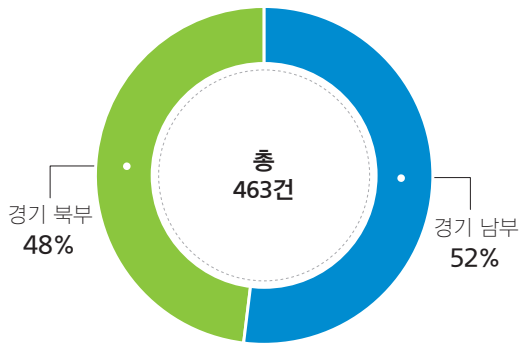
학대의심사례 463건 중 총 304건의 사례가 2021년 12월 31일로 종결되었으며 당해 연도 사례종결률은 65.7%로 나타났다.

[표 2-5] 2021년 신고접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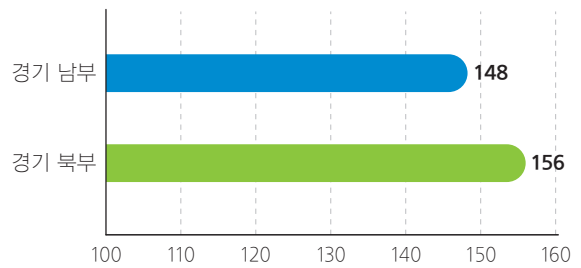
(단위: 건, %)

구분	학대의심사례	종결사례	당해 연도 사례종결률
계	463	304	65.7
경기 남부	242	148	61.2
경기 북부	221	156	7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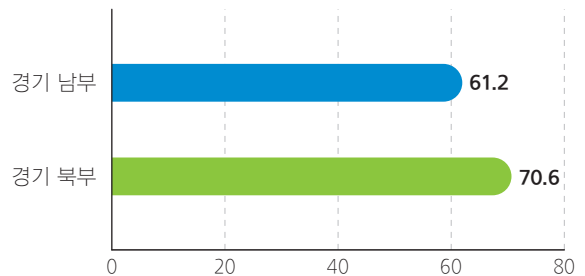
[그래프 2-6] 학대의심사례 현황



[그래프 2-7] 종결사례 현황



[그래프 2-8] 당해 연도 사례종결률 현황



6) 모니터링

학대 사례에 대해 지원이 완료된 이후 일정 기간 재학대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사후 모니터링 기간에 최소 1회 이상 피해장애인과 직접 소통하여 안전과 재학대 여부를 확인한다. 사례에 따라 예외적으로 피해장애인이 명확하게 더 이상의 연락을 원하지 않거나 사망, 수감 등의 사유로 연락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지역으로 사례가 이관된 경우에는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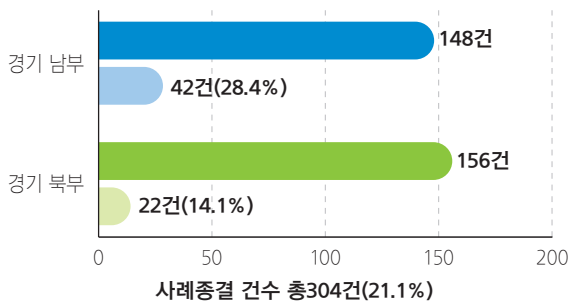
종결된 학대 사례 304건 중 64건(21.1%)에 대해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 하였으며, 사후 모니터링 실시 횟수는 254회 이다.

[표 2-6] 모니터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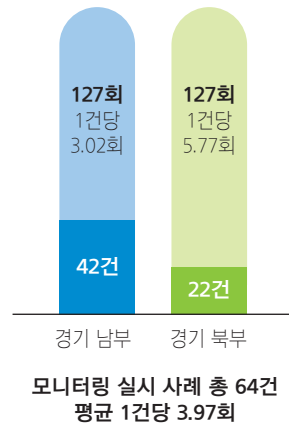
(단위: 건, %)

구 분	사례종결 건수	모니터링 실시 사례	비율	모니터링 실시 횟수	사례별 모니터링 횟수
계	304	64	21,1	254	3,97
경기 남부	148	42	28,4	127	3,02
경기 북부	156	22	14,1	127	5,77

[그래프 2-9] 모니터링 실시 현황



[그래프 2-10] 모니터링 지원 현황





2. 장애인학대 사례 분석

장애인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방임으로 장애인학대를 분류하고 있다. 기존 학대유형 외 피해장애인이 한 사건에서 여러 유형의 학대 피해를 경험한 경우 이를 '중복 학대'로 분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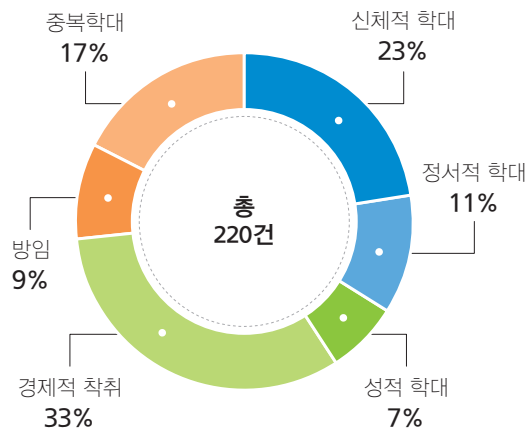
학대로 판정된 사례 220건 중 경제적 착취 32.7%(72건)가 가장 많았으며, 신체적 학대 22.7%(50건), 정서적 학대 11.4%(25건), 방임 9.1%(20건) 순으로 판정되었다.

[표 2-7] 학대 사례 현황

(단위: 건, %)

유형	계	남부	북부	비율
신체적 학대	50	43	7	22.7
정서적 학대	25	13	12	11.4
성적 학대	15	10	5	6.8
경제적 착취	72	35	37	32.7
유기	0	0	0	0
방임	20	4	16	9.1
중복 학대	38	21	17	17.3
계	220	126	94	100

[그래프 2-11] 장애인학대 유형 분석



1) 피해장애인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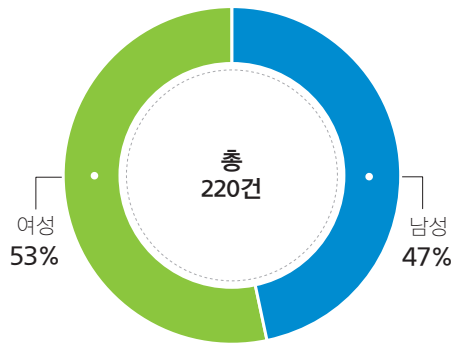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220건이며, 피해자 중 여성은 53.2%(117명)로 남성 46.8%(103명)보다 6.4% 높게 나타났다.

[표 2-8] 피해장애인 성별 현황

(단위: 건, %)

구분	남성	여성	계
계	103	117	220
경기 남부	56	70	126
경기 북부	47	47	94

[그래프 2-12] 피해장애인 성별 현황



2) 피해장애인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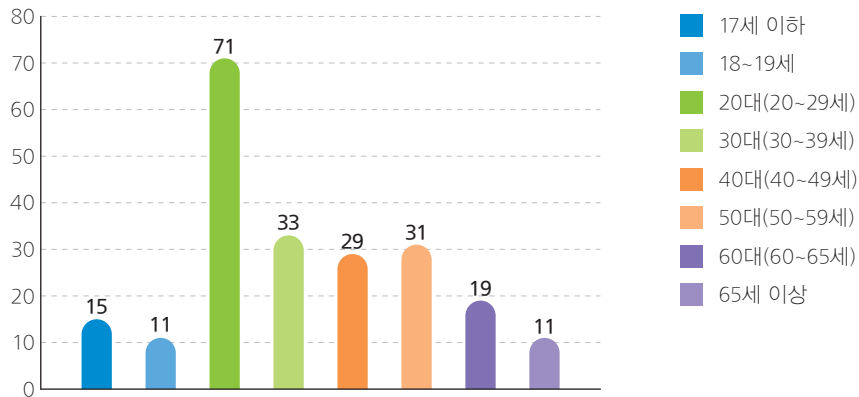
피해장애인의 연령은 20대가 32.3%(71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대 15.0%(33명), 50대 14.1%(31명), 40대 13.2%(29명), 60대 8.6%(19명), 17세 이하 6.8%(15명), 65세 이상 5.0%(11명), 18~19세 5.0%(11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2-9] 피해장애인 연령 현황

(단위: 명, %)

연령	계	남부	북부	비율
17세 이하	15	7	8	6.8
18~19세	11	7	4	5.0
20대(20~29세)	71	45	26	32.3
30대(30~39세)	33	19	14	15.0
40대(40~49세)	29	14	15	13.2
50대(50~59세)	31	18	13	14.1
60대(60~65세)	19	10	9	8.6
65세 이상	11	6	5	5.0
계	220	126	94	100

[그래프 2-13] 피해장애인 연령 현황



3) 피해장애인 장애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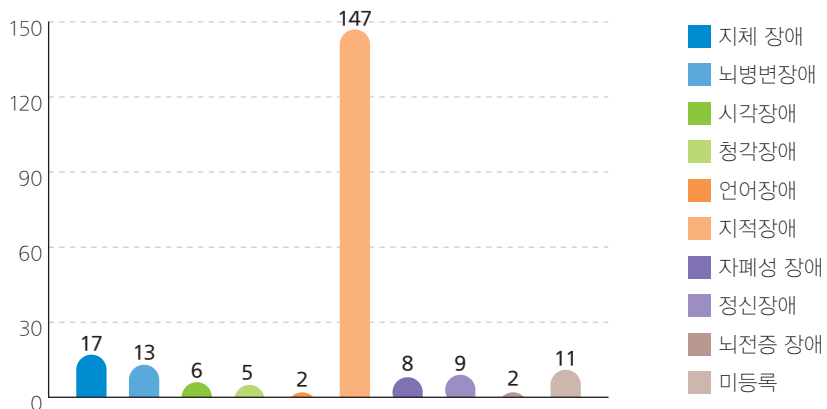
피해장애인의 장애 유형은 지적장애가 66.8%(147건)로 가장 많았으며, 지체장애 7.7%(17건), 뇌병변장애 6.0%(13건), 정신장애 4.1%(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장애인의 다수를 차지하는 발달장애(지적장애, 자폐성장애)는 70.4%(155건)이었고, 정신장애를 포함하는 정신적 장애는 74.5%(164건)로 나타났다.

[표 2-10] 피해장애인 장애 유형 현황

(단위: 건, %)

장애 유형	건수			비율
	계	남부	북부	
지체 장애	17	7	10	7.7
뇌병변장애	13	4	9	6.0
시각장애	6	2	4	2.7
청각장애	5	4	1	2.3
언어장애	2	1	1	0.9
지적장애	147	86	61	66.8
자폐성 장애	8	5	3	3.6
정신장애	9	5	4	4.1
신장 장애	-	-	-	-
심장 장애	-	-	-	-
호흡기 장애	-	-	-	-
간 장애	-	-	-	-
안면장애	-	-	-	-
장루 · 요루장애	-	-	-	-
뇌전증 장애	2	1	1	0.9
미등록	11	11	-	5.0
계	220	126	94	100

[그래프 2-14] 피해장애인 장애 유형 현황



4) 피해장애인 장애 정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2019년 7월부터 기존의 '장애등급'이 '장애 정도'로 개편되었다. 기존 1~3등급의 장애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으로, 4~6등급의 장애는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장애인)'으로 변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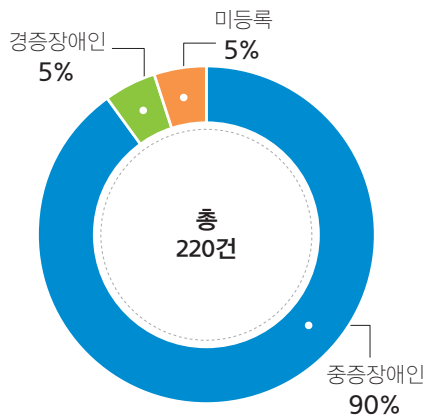
피해장애인 중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209건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은 90.0%(19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장애인)'은 5.0%(11건)이었다.

[표 2-11] 피해장애인 장애 정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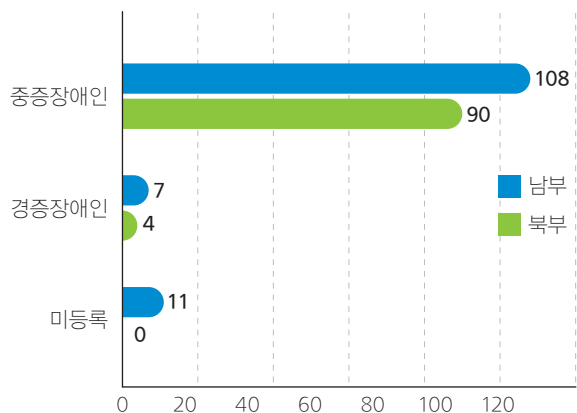
(단위: 건, %)

장애 정도	계	남부	북부	비율
중증장애인	198	108	90	90.0
경증장애인	11	7	4	5.0
미등록	11	11	0	5.0
계	220	126	94	100

[그래프 2-15] 피해장애인 장애 정도 현황_1



[그래프 2-16] 피해장애인 장애 정도 현황_2



5) 피해장애인 거주 형태

신고 당시 피해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은 재가와 시설로 분류된다. 시설은 다수가 집단으로 거주하면서 관리자가 있는 주거 형태로 사회복지시설 중 거주시설 혹은 생활시설, 미신고시설 등이 해당한다. 이 외에는 모두 재가로 분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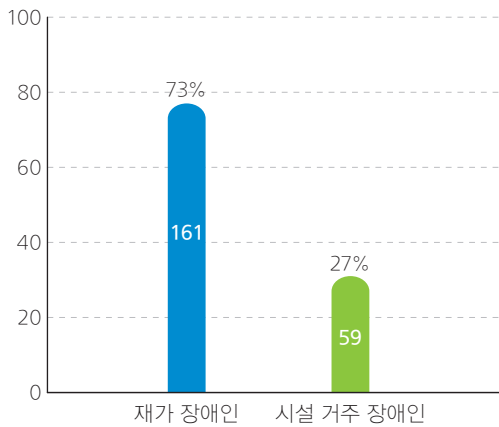
신고 당시 피해장애인이 재가에서 생활하는 경우는 73%(161건)이었고, 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는 27%(59건)이었다.

[표 2-12] 피해장애인 거주 형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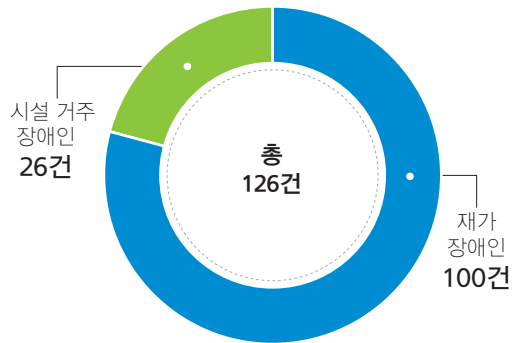
(단위: 건, %)

거주 형태	계	남부	북부	비율
재가 장애인	161	100	61	73
시설 거주 장애인	59	26	33	27
계	220	126	9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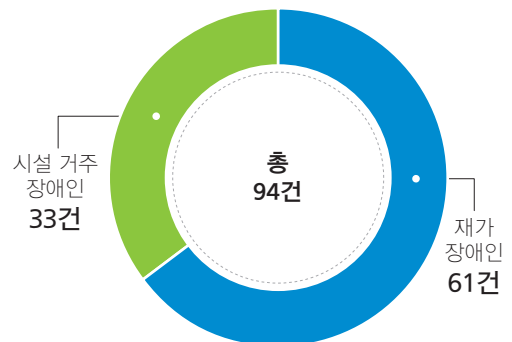
[그래프 2-17] 거주 형태 현황



[그래프 2-18] 거주 형태_남부



[그래프 2-19] 거주 형태_북부



6) 피해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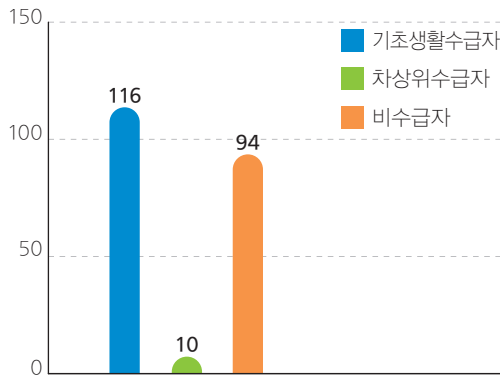
피해장애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를 살펴보면 피해장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는 52.7%(116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는 42.7%(94건), 차상위수급자인 경우는 4.6%(10건)로 나타났다.

[표 2-13] 피해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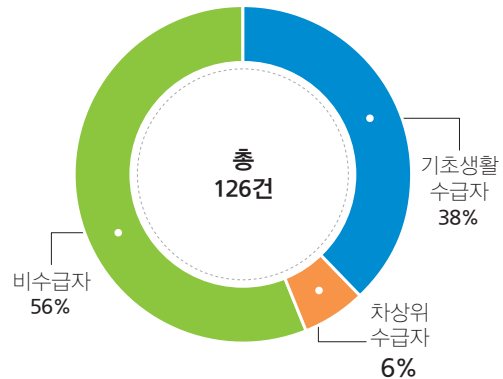
(단위: 건, %)

구분	계	남부	북부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116	48	68	52.7
차상위수급자	10	7	3	4.6
비수급자	94	71	23	42.7
계	220	126	9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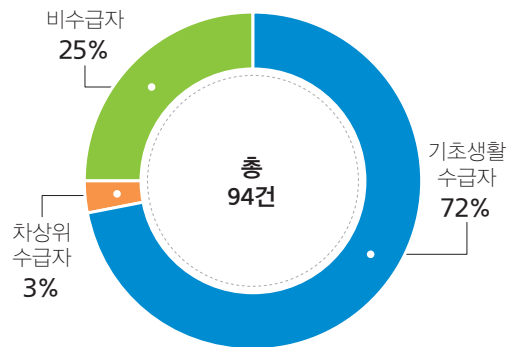
[그래프 2-20] 피해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 현황



[그래프 2-21] 수급자 여부_남부



[그래프 2-22] 수급자 여부_북부



7) 학대행위자 성별

장애인학대의 행위자는 하나의 사례에 여러 명이 있을 수 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하나의 사례에 행위자가 다수이더라도 주 행위자 1명에 대한 정보만 통계로 집계하고 있어 본 보고서의 피해장애인 수와 학대행위자 수는 동일하게 220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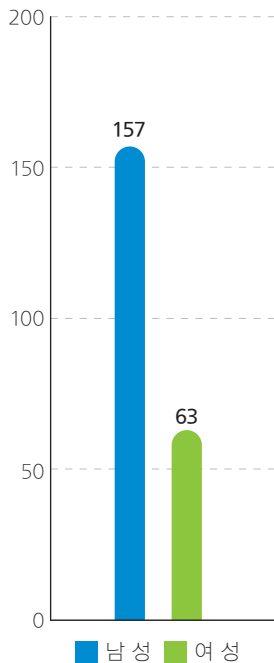
장애인학대사례 220건의 학대행위자 성별을 보면 남성이 71.4%(157명), 여성이 28.6%(63명)이었다. 학대행위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약 2.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4] 학대행위자 성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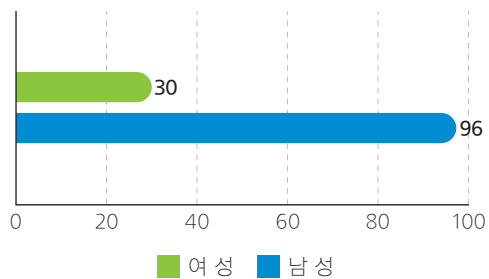
(단위: 건, %)

성 별	건 수			비 율
	계	남 부	복 부	
남 성	157	96	61	71.4
여 성	63	30	33	28.6
계	220	126	9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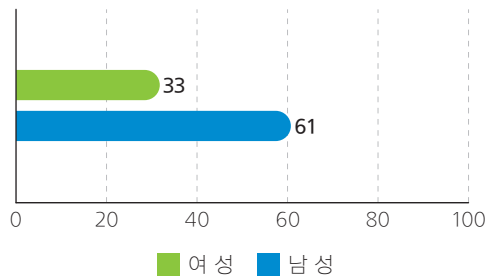
[그래프 2-23] 학대행위자 성별 현황



[그래프 2-24] 학대행위자 성별_남부



[그래프 2-25] 학대행위자 성별_복부



8) 학대행위자 연령

학대행위자의 연령은 50대 26.8%(59명), 60대 23.1%(51명), 40대 17.3%(38명)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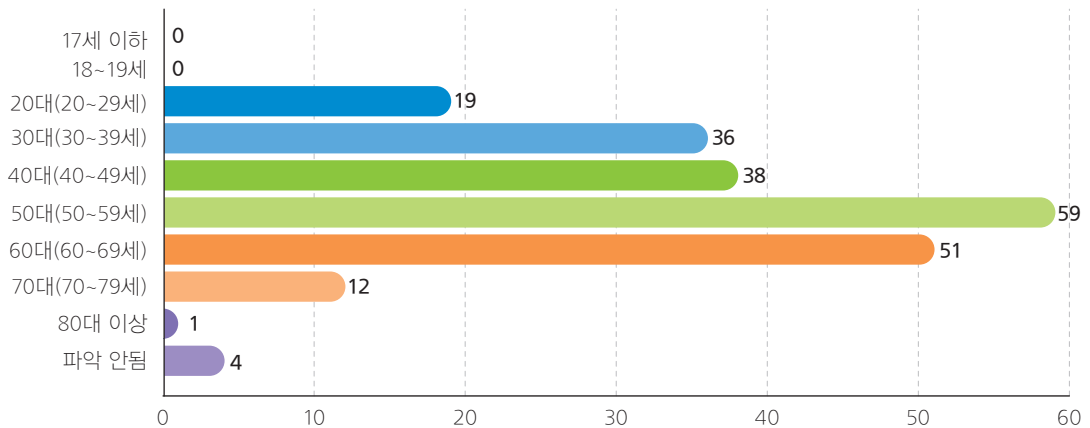
[표 2-15] 학대행위자 연령 현황

(단위: 건, %)

연령	계	남부	북부	비율
17세 이하	-	-	-	-
18~19세	-	-	-	-
20대(20~29세)	19	14	5	8.6
30대(30~39세)	36	18	18	16.4
40대(40~49세)	38	26	12	17.3
50대(50~59세)	59	32	27	26.8
60대(60~69세)	51	28	23	23.1
70대(70~79세)	12	8	4	5.5
80대 이상	1	-	1	0.5
파악 안됨	4	-	4	1.8
계	220	126	94	100

학대행위자의 연령이 파악되지 않은 경우는 1.8%(4건)로 피해장애인이 학대행위자를 특정하지 못하거나 구체적인 정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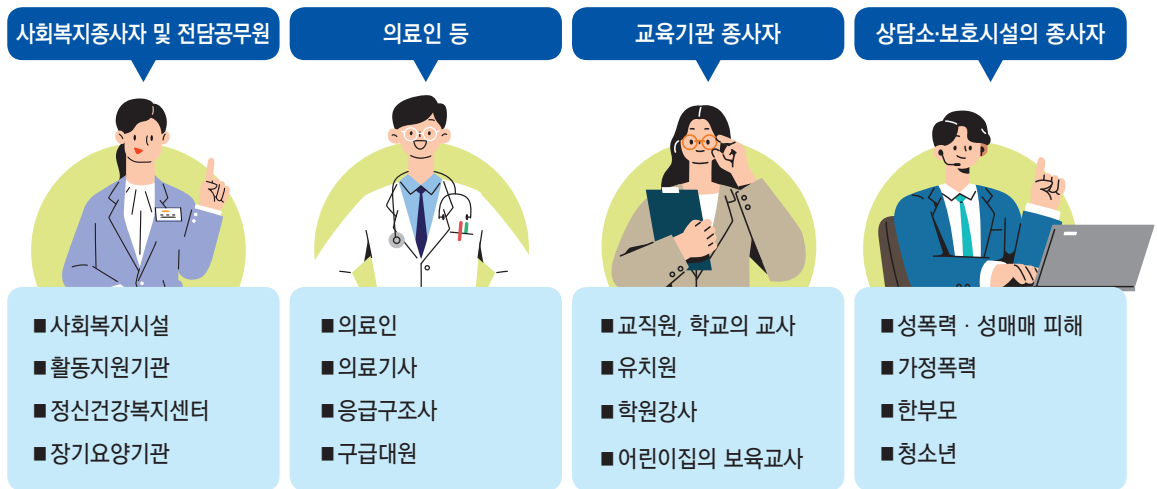
[그래프 2-26] 학대행위자 연령 현황



9)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는 가족 및 친인척, 타인,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 신고의무자가 아닌 유관 기관 종사자, 본인, 파악 안됨으로 분류하고 있다. 가족 및 친인척에는 배우자, 부, 모, 조부모, 자녀,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그 외 친척으로 나뉜다. 타인에는 동거인, 이웃,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고용주, 모르는 사람이 포함 된다.

2020년부터는 기관종사자를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와 신고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로 나누어 집계하였다.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에 명시한 직군으로 나누었고, 신고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는 교육기관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 아동 관련 기관 종사자, 노인 관련 기관 종사자, 기타 복지 관련 기관 종사자, 일반공무원, 경찰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로 나누었다.



장애인학대사례 220건 중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에 의한 학대가 34.5%(76건)로 가장 많았다. 행위자가 가족 및 친인척인 경우는 30.1%(66건), 타인은 32.8%(72건), 신고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는 2.7%(6건), 파악 안되는 경우는 0%(0건), 본인은 0%(0건)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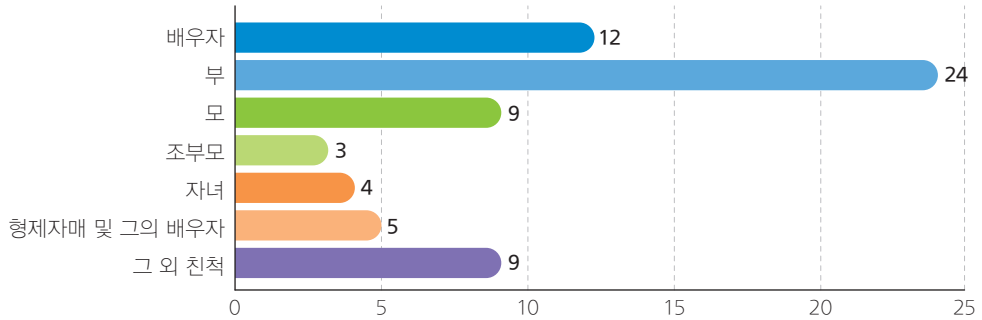
신고의무자가 대부분 장애인과 가까운 거리에서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안전을 돌보는 직무 특성이 있는 만큼 신고 의무자에 의한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의무자에 의한 학대 행위 처벌과 이들에 대한 학대 예방 교육이 강화 되어야 한다.

[표 2-16]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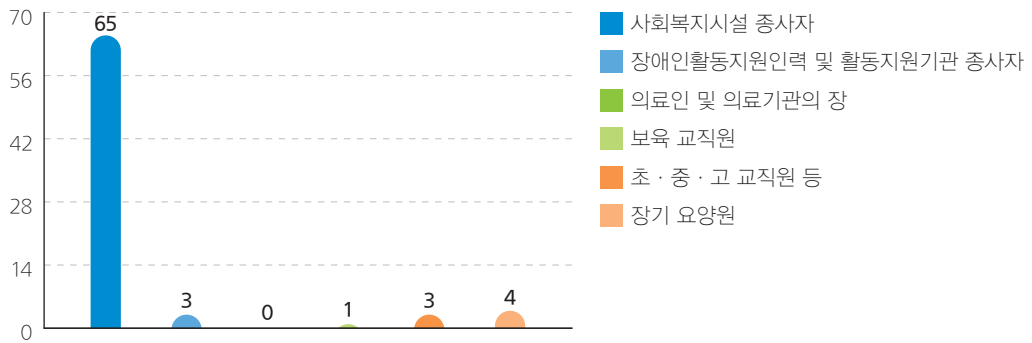
(단위: 건, %)

관계		계	남부	북부	비율
가족 및 친인척	배우자	12	9	3	5.5
	부	24	21	3	10.9
	모	9	5	4	4.1
	조부모	3	3	-	1.4
	자녀	4	4	-	1.8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5	2	3	2.3
	그 외 친척	9	5	4	4.1
	소계	66	49	17	30.1
타인	동거인	22	17	5	10.0
	이웃	4	3	1	1.8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34	25	9	15.5
	고용주	3	3	-	1.4
	모르는 사람	9	5	4	4.1
	소계	72	53	19	32.8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65	14	51	29.5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3	1	2	1.4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	-	-	-
	보육 교직원	1	1	-	0.4
	초·중·고 교직원 등	3	1	2	1.4
	장기 요양원	4	4	-	1.8
	소계	76	21	55	34.5
신고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	교육기관 종사자	1	-	1	0.45
	의료기관 종사자	1	1	-	0.45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	2	1	1	0.9
	아동 관련 기관 종사자	1	-	1	0.45
	노인 관련 기관 종사자	1	1	-	0.45
	소계	6	3	3	2.7
본인		-	-	-	
파악 안됨		-	-	-	
계		220	126	9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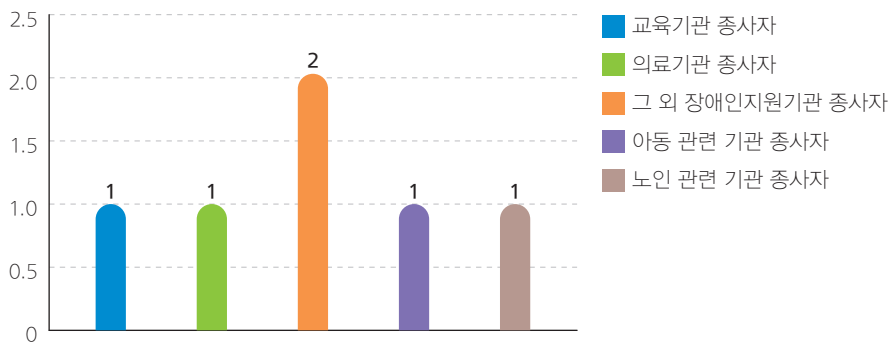
[그래프 2-27]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_가족 및 친인척



[그래프 2-28]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_신고의무자



[그래프 2-29]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_비신고의무자



10)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 동거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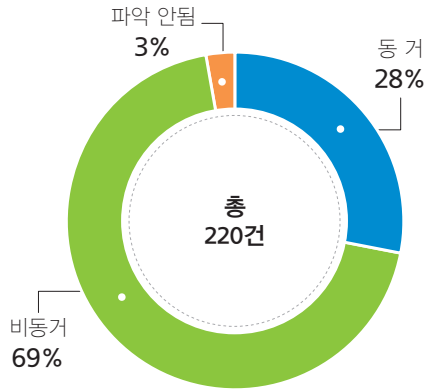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동거 여부를 보면 장애인학대사례 220건 중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이 동거하지 않는 경우가 152건(69.1%)이었으며, 동거하는 경우가 62건(28.2%), 파악되지 않은 경우가 6건(2.7%)으로 확인되었다.

[표 2-17]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동거 여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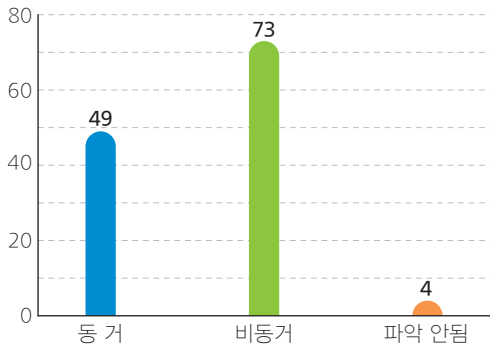
(단위: 건, %)

구분	계	남부	북부	비율
동 거	62	49	13	28.2
비동거	152	73	79	69.1
파악 안됨	6	4	2	2.7
계	220	126	9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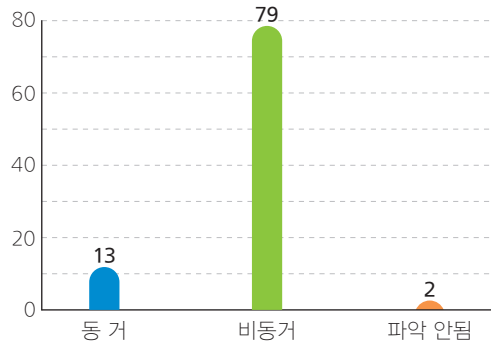
[그래프 2-30]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동거 여부 현황



[그래프 2-31] 동거 여부_남부



[그래프 2-32] 동거 여부_북부



11) 학대행위자 신고의무자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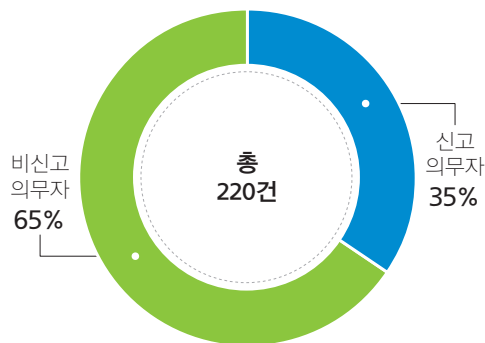
학대행위자의 신고의무자 여부에서는 전체 220건 중 76건(34.5%)이 신고의무자이고, 비신고의무자는 144건(65.5%)으로 비신고의무자의 학대 행위 비중이 약 1.9배 더 높게 나타났다.

[표 2-18] 학대행위자 신고의무자 여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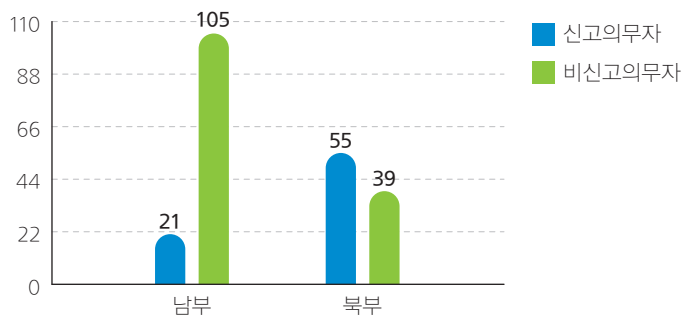
(단위: 건, %)

연령	계	남부	북부	비율
신고의무자	76	21	55	34.5
비신고의무자	144	105	39	65.5
계	220	126	94	100

[그래프 2-33] 신고의무자 여부 현황_1



[그래프 2-34] 신고의무자 여부 현황_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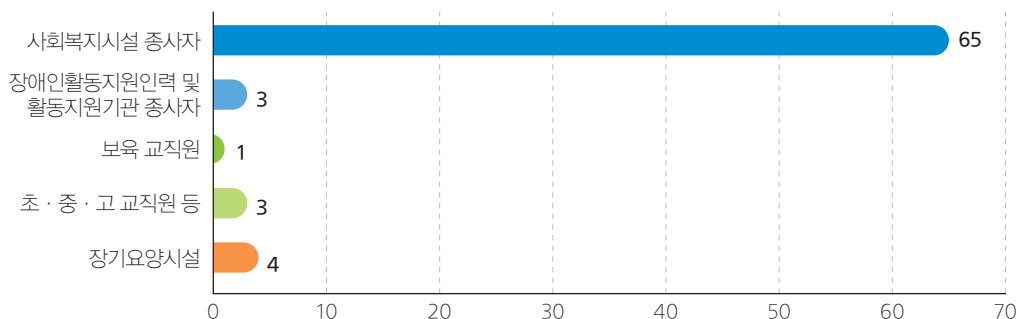
○ 학대행위자 신고의무자별 현황

[표 2-19] 학대행위자 신고의무자별 현황

(단위: 명, %)

신고의무자	계	남부	북부	비율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	-	-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65	14	51	85.5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3	1	2	3.9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	-	-	-
의료기사	-	-	-	-
응급구조사	-	-	-	-
구급대의 대원	-	-	-	-
정신건강복지센터장과 종사자	-	-	-	-
보육 교직원	1	1	-	1.3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등	-	-	-	-
초·중·고 교직원 등	3	1	2	3.9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등	-	-	-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	-	-	-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	-	-	-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	-	-	-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	-	-	-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종사자	-	-	-	-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	-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	-	-	-
청소년시설 및 단체 종사자	-	-	-	-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종사자	-	-	-	-
장기요양시설	4	4	-	5.3
계	76	21	55	100

[그래프 2-35] 학대행위자 신고의무자별 현황



12) 학대 발생 장소

장애인학대 발생 장소는 학대유형과 학대행위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해장애인 거주지, 학대행위자 거주지, 기타 거주지, 직장(일하는 곳), 교육기관, 일반 의료기관, 정신 의료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보호시설(쉼터),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정신요양시설, 아동 관련 시설, 노인 관련 시설, 기타 복지 관련 시설, 종교시설, 미신고시설, 온라인, 상업시설, 기타 등으로 분류한다.

발생한 장소를 살펴보면 피해장애인 거주지가 32.3%(71건)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거주시설 15.0%(33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11.8%(2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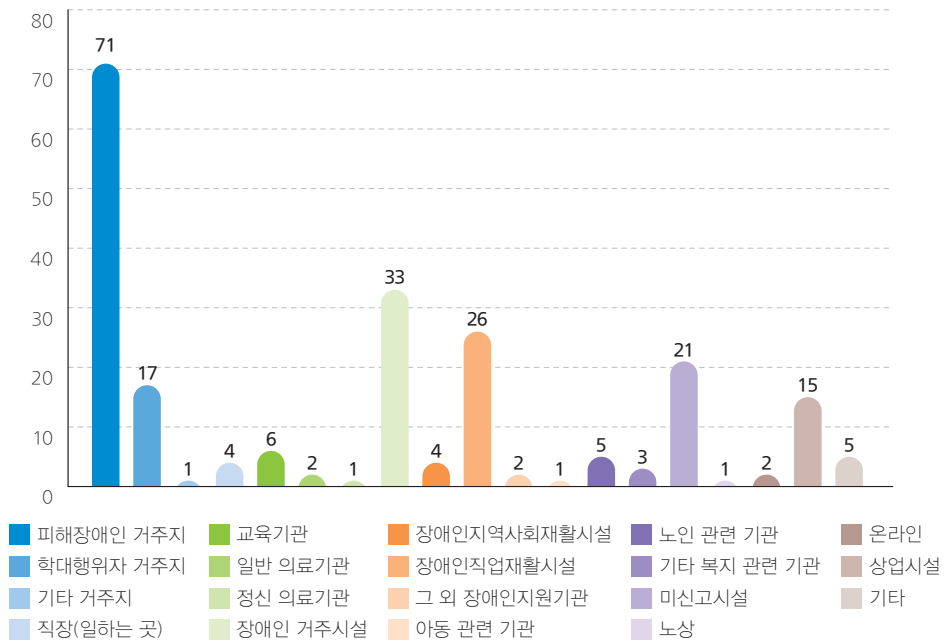
[표 2-20] 학대 발생 장소 현황

(단위: 건, %)

발생 장소		계	남부	북부	비율
피해장애인 거주지		71	47	24	32.3
학대행위자 거주지		17	14	3	7.7
기타 거주지		1	-	1	0.5
직장(일하는 곳)		4	3	1	1.8
교육기관		6	2	4	2.7
일반 의료기관		2	-	2	0.9
정신 의료기관		1	1	-	0.5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33	5	28	15.0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4	4	-	1.8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6	5	21	11.8
	장애인생산물판매시설	-	-	-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	-	-
보호시설(쉼터)		-	-	-	-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2	1	1	0.9
정신요양시설		-	-	-	-
정신재활시설		-	-	-	-
아동 관련 기관		1	1	-	0.5
노인 관련 기관		5	4	1	2.3
기타 복지 관련 기관		3	1	2	1.3

발생 장소	계	남부	북부	비율
종교시설	-	-	-	-
미신고시설	21	18	3	9.5
노상	1	-	1	0.5
온라인	2	-	2	0.9
상업시설	15	15	-	6.8
기타	5	5	-	2.3
파악 안됨	-	-	-	-
계	220	126	94	100

[그래프 2-36] 학대 발생 장소



제 3 장

장애인차별 사례 분석

장애인학대 의심 사례 외에 장애인차별 사례, 정보 문의, 불만 또는 민원 등의 일반사례를 접수하고 있다. 이하는 경기도에 소재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2개소에 접수된 신고 건수 중 장애인차별 사례를 분석한 결과이다.

1. 장애인차별 신고접수 현황

신고 접수된 장애인차별 사례는 84건(21.6%)이며, 장애인차별을 제외한 일반사례는 304건(78.4%)이었다.

[표 3-1] 장애인차별 신고접수 현황

(단위: 건, %)

구분	계	남부	북부	비율
일반	304	161	143	78.4
차별	84	61	23	21.6
계	388	222	166	100

2. 장애인차별 상담 및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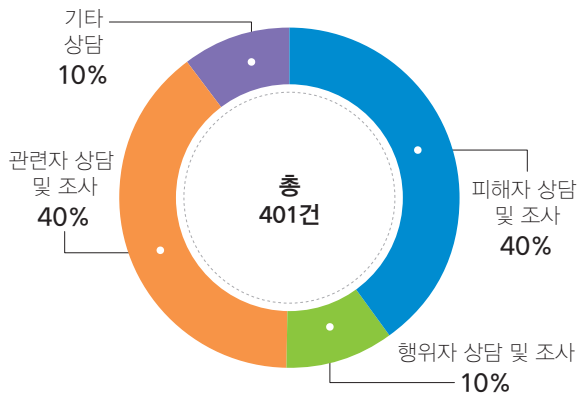
접수된 84건에 대해 피해 내용을 확인하고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 행위자, 관련자를 대상으로 조사 및 상담을 실시한 현황이다. 전체 상담 및 조사는 401건 이뤄졌으며, 이 중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조사는 161건(40.2%), 관련자 158건(39.4%), 행위자 41건(10.2%)이 이뤄졌다.

[표 3-2] 장애인차별 상담 및 조사 현황

(단위: 건, %)

구분	계	남부	북부	비율
피해자 상담 및 조사	161	109	52	40.2
행위자 상담 및 조사	41	24	17	10.2
관련자 상담 및 조사	158	81	77	39.4
기타 상담	41	20	21	10.2
계	401	234	167	100

[그래프 3-1] 장애인차별 상담 및 조사 현황



3. 장애인차별 유형

접수된 84건 중 고용차별이 17건(20.2%)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16건(19.1%), 사법/행정 13건(15.5%), 시설물 접근 9건(10.7%), 교육 8건(9.5%), 재화/용역 일반 7건(8.3%)의 순서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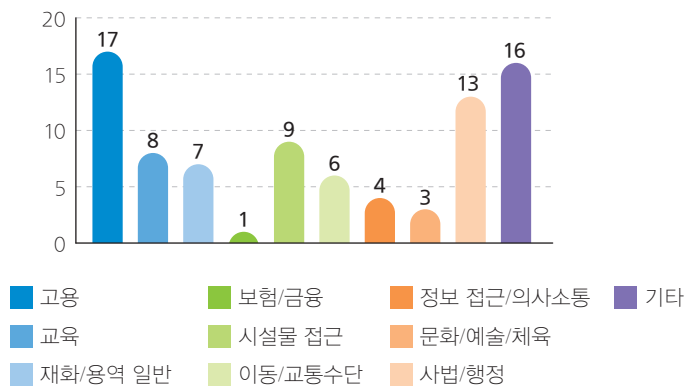
기타 영역은 다른 장애인차별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은 차별로 모·부성권, 성,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장애 여성, 장애아동 등과 관련된 내용을 말한다.

[표 3-3] 장애인차별 유형 현황

(단위: 건, %)

구분	계	남부	북부	비율
고용	17	15	2	20.2
교육	8	7	1	9.5
재화/용역 일반	7	5	2	8.3
보험/금융	1	0	1	1.2
시설물 접근	9	7	2	10.7
이동/교통수단	6	3	3	7.1
정보 접근/의사소통	4	4	0	4.8
문화/예술/체육	3	2	1	3.6
사법/행정	13	6	7	15.5
기타	16	12	4	19.1
계	84	61	23	100

[그래프 3-2] 장애인차별 유형 현황



4. 장애인차별 지원(처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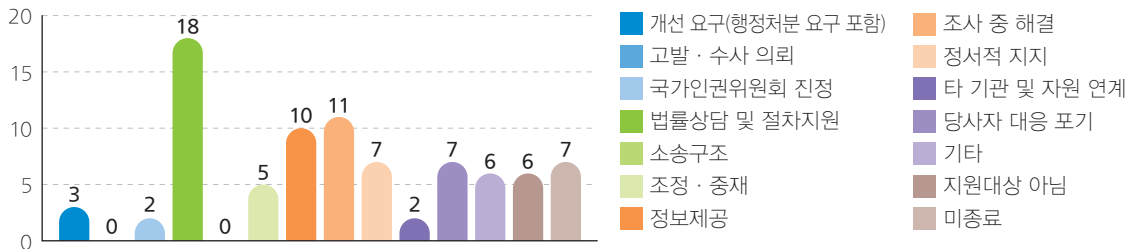
접수된 84건에 대한 지원 및 처리는 법률상담 및 절차지원 18건(21.4%), 조사 중 해결 11건(13.1%), 정보제공 10건(11.9%), 정서적 지지·당사자 대응 포기 각 7건(8.3%)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3-4] 장애인차별 처리결과 현황

(단위: 건, %)

처리결과	계	남부	북부	비율
개선 요구(행정처분 요구 포함)	3	1	2	3.6
고발·수사 의뢰	—	—	—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2	1	1	2.4
법률상담 및 절차지원	18	13	5	21.4
소송구조	—	—	—	—
조정·중재	5	1	4	6.0
정보제공	10	5	5	11.9
조사 중 해결	11	11	—	13.1
정서적 지지	7	7	—	8.3
타 기관 및 자원 연계	2	1	1	2.4
당사자 대응 포기	7	6	1	8.3
기타	6	5	1	7.15
지원대상 아님	6	4	2	7.15
미종료	7	6	1	8.3
계	84	61	23	100

[그래프 3-3] 장애인차별 처리결과 현황



제 4 장

장애인 인권증진 사업

「장애인복지법」 및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경기도 장애인 인권 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장애인학대 및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경기도 내 장애인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하였다.

1.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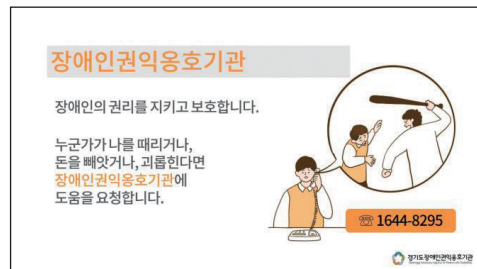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구 및 개발하고 있다. 2021년에는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2종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신고의무자 교육 프로그램 1종, 경기도민 대상 장애인차별 사례 중심의 안내서 1종을 개발하였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인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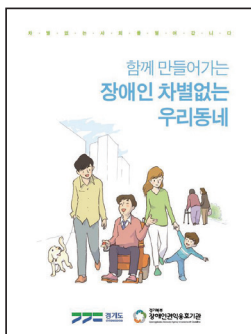
대상: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발달장애인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인권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인권교육을 위한 애니메이션과 이러닝 콘텐츠 개발(수원시와 공동개발)

재가 장애인학대 예방 교육콘텐츠 개발(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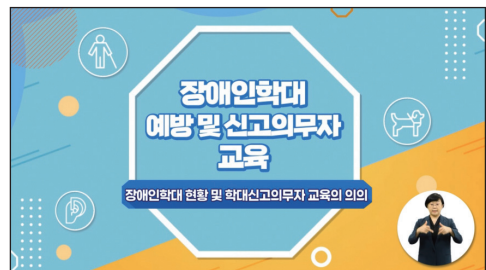
대상: 재가 발달장애인
 장애인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고 있는 발달장애인 대상 학대 예방 교육콘텐츠 제작 및 배포

함께 만들어가는 장애인차별 없는 우리 동네(2021)



대상: 경기도민
 지역사회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 사례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안내서 제작 및 배포

학대신고 의무자 온라인 교육 과정 개발(2021)



대상: 학대신고 의무자
 탑재: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지식(GSEEK/www.gseek.kr) 도(道)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와 협업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온라인 과정 개발

2. 실태조사 및 교육사업

장애인학대 및 인권침해를 예방하고자 실태조사, 학대 예방 및 인권교육, 인식개선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학대신고의무자,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장애인,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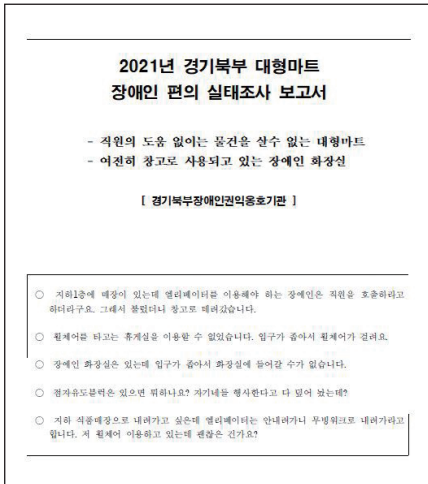
가. 실태조사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도구 개발(2021)

대상: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의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장애인 거주시설의 특성과 거주인의 특성에 부합한 조사에 활용하기 위한 그림 도구 개발



경기북부 대형마트 장애인 편의 실태조사(2021)

대상: 대형마트 32곳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1,000㎡ 이상 대형마트의 접근성 및 편의 제공 실태에 관한 조사 실시

나. 교육사업

찾아가는 인식개선 및 학대 예방 교육(2021)



- 대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인
-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직원 및 이용인, 자립생활 주택 입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대 예방 교육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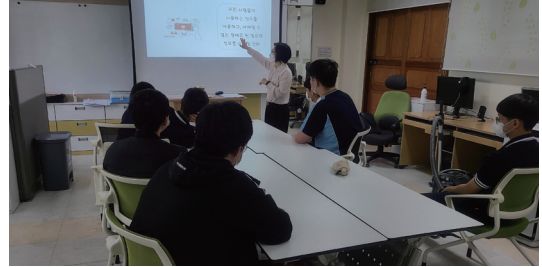
인권강사단 운영(스터디 및 모니터링)(2021)



- 대상: 도(道)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촉 강사
- 기관 소속의 인권강사단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기 학습 모임 및 강의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진행



장애인 인식개선 및 학대 예방 도민교육(2021)



- 대상: 경기도민 전체
- 기관 소속의 인권강사단을 활용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인 및 종사자 등 교육 수강생 중심의 맞춤형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인권교육, 인식개선교육 등 실시

시민인권학교(2021)



- 대상: 경기도민
- 경기도민이 장애인 인권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와 관련된 인권영화를 함께 감상하고 감독과의 대화를 통해 인권에 대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회 제공

경기도 지적장애인 전수조사 조사원 사전교육

- 대상: 경기도 31개 시·군 지자체 공무원
- 경기도 지적장애인 전수조사에 참여하는 조사원(공무원)에게 조사 안내, 지침 설명, 설문지 활용법 등의 내용으로 사전 교육을 진행

3. 홍보사업

장애인학대 및 차별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언론, 온라인(SNS 포함), 뉴스레터 등을 통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실시하였다. 도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주제로 학대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공모전을 실시하고, 홍보물을 제작 및 배포 등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학대예방공모전(N행시, 인권증진 사업아이디어, 온라인콘텐츠 공유인증이벤트)

**2021년 제3차
5행시 공모전 당선작품**

경기도장애인인권증진사업은 장애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학대 및 차별을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인 인권증진 5행시** 공모전을 진행하였으며 공모한 작품 중 다양한 작품을 여태도 같이 공유합니다.

장애인 학대와 차별이 없는 사회 장애인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장애인인권증진사업

**장애인학대 및 차별 예방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공모내용 -> "학대예방" "인권증진" "사업아이디어" "N행시" "온라인 콘텐츠"
-> 입찰금액 제안서/아이디어
-> 통장 아이디어

홍모기간
2021. 12. 10 (금) - 12. 21 (화)

참여방법
홈페이지 "공직사항-협력과로"에서 안내문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제출 발송

*** winners를 클릭하면 안내문 및 공모제안서 틀이 바로 이동합니다.**
문의 : 인권증진팀 070-4405-6626

**온라인 콘텐츠
공유 인증 이벤트**

공모내용
-> 기존 유튜브 채널 콘텐츠를 통한 SNS대중홍보활동
-> 당해내용을 유튜브 채널 "일과사랑"에 업로드

홍모기간
2021. 12. 10 (금) - 12. 21 (화)

참여방법
-> 고품질 콘텐츠 생성을 위한 기존 콘텐츠 활용
-> 당해내용을 유튜브 채널 "일과사랑"에 업로드

*** winners를 클릭하면 안내문으로 이동합니다.**
문의 : 인권증진팀 070-4405-6626

월간 소식지

10월 뉴스레터
경기도장애인인권증진사업

경기도장애인인권증진사업
1644-8295

경기도장애인인권증진사업
1644-8295

경기도장애인인권증진사업
1644-8295

홍보 물품 제작(신고 전화 현판, 신고 전화 원형 스티커, 학대 예방 포스터 등) 및 배포

여러분의 신고가 장애인학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학대 · 차별 신고전화

1644-8295

위 번호로 문자도 가능합니다

장애인 학대신고

1644-8295

24시간 신고 가능

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학대 예방을 위한 캠페인

1644-8295

- 경기도 내 시군청사 및 동주민센터 전수 신고현판 배포
- 장애인복지시설 및 도민대상 신고스티커 배포
- 장애인 부모단체 공동 학대예방캠페인 진행
- 경기도지적발달장애인 복지협회, 경기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

차별 및 학대 예방 캠페인

장애인차별·학대

당신은 신고하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불을 이르게 해요

혹시라도
신하게 말해요

어떤일이
내 불을 끄려요

장애인차별상담 및 학대신고
1644-8295
112

일몰 시까지
전문 안착요

이웃에
치욕을 주려해요

장애인의
일몰을
안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일몰을
안착할 수 있도록

112로 신고! 공정한 세상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차별상담 및 학대신고

1644-8295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포스터 / 현판 / 리플릿

강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 차별예방 및 학대신고

상담·신고 및 지원 절차

**당신의 관심과
관동의 전화를
변화하는 장애인들의 삶**

장애인차별상담 및 학대신고
1644-8295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카드 뉴스

장애인의 날 알고 계신가요?

세계 지리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12.03

04.20

UN에서 지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은 12월 3일이며, 우리나라는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권 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라는 이야기가 될지 없습니다.

장애인도
누군가에게 보호 받아야 하는 동정과
사회적 대상 아닌 정당한 권리의 주체
로서 그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장애와 관련한 차별은 아직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카페

장애인에게 할애할 수 없는 주차장

장애인에게 할애할 수 없는 편의점

시각장애인에게 할애할 수 없는 편의점

이런 장애인의 날엔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한번 살펴보고, 나는 과연 장애인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하고 고민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장애인의 날 알고 계신가요?' (공동제작: 경기북부경찰청)

5. 협력체계 구축사업

피해장애인을 지원하고 장애인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군 및 다양한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협력체계구축사업



- 시군 장애인복지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장애인 학대·차별 예방 및 지원에 기여
- 1. 장애인 인권정책 개선 시·군 간담회
- 2. 공공 및 민간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협회 간담회
 - 장애인 부모단체 간담회
 - 시·군 담당 공무원 간담회
 - 경기남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간담회
 - 학대피해장애인 지원계획 회의
 - 유관기관 간담회 및 통합사례 회의
- 3. 유관기관 업무협약을 통한 지원 네트워크 구축

옴부즈맨사업



- 대상: 경기 남부 장애인복지관 소속 시민옹호인
- 내용: 시민옹호인 사업 담당자 간담회, 시민옹호인 간담회, 시민옹호인역량강화교육, 장애인학대 예방 캠페인
- 지역사회에서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장애인복지관의 시민옹호인 대상 역량 강화교육 및 장애인학대 및 차별 등 인권침해 예방 활동을 지원하여 경기도 거주 장애인의 인권증진에 기여

권리충전소 운영



- 대상: 경기 북부 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
- 내용: 찾아가는 장애인차별 및 학대 상담, 기관 및 학대신고 전화번호 홍보
-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장애인차별 및 학대 관련 상담과 홍보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




III




2021 경기도 장애인 학대·차별 현황보고서

피해장애인 주요 지원사례




1. 신체적 학대(폭행)
2. 정서적 학대
3. 성적 학대(성희롱, 추행 등)
4. 경제적 착취(횡령, 노동착취 등)
5. 유기·방임




1. 신체적 학대(폭행)

<p>신고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 보호센터 종사자가 지적장애인 이용인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신고접수
<p> 조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 당시 CCTV 영상 확인 결과, 행위자는 위험한 물건인 진공청소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폭행하였고 손과 발로 여러 차례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폭행하였음. 피해자의 머리에서 다량의 출혈이 발생 • 행위자는 청소를 하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행위자에게 다가왔고, 놀라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항변
<p> 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위자 고발 조치(특수상해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 범인도피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사 변호인 연계 지원 • 관할 지자체에 시설조사 결과보고서를 발송하여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
<p> 지원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위자 징역형(집행유예), 사회봉사,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선고(초범,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 고려) • 공익신고자 범인도피 혐의 인정되지 않아 경찰 불송치 결정 • 거주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p>신고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간보호시설 종사자가 지적장애인 이용인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신고 접수
<p> 조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 당시 CCTV 영상 확인 결과, 행위자는 피해자의 귀 및 귀 옆 머리카락을 5회 이상 강하게 잡아당겼고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가하였음
<p> 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 • 행위자 고발 조치(장애인복지법 위반) • 피해자 경찰조사 참여 및 경찰에 의견서 제출 • 피해자 형사합의금 수령에 대한 법률상담 • 관할 지자체에 시설조사 결과보고서를 발송하여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
<p> 지원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위자 기소유예 처분(초범,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 고려) • 거주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p>신고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가 지적장애인이 노래방 업소에서 근무를 하던 중, 손님에게 주먹 및 발로 얼굴 안면 부위를 폭행당했다는 신고접수
<p> 조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접수 당시 행위자 경찰 신고되어 재판 진행 중이었음 • 재판 모니터링 결과 행위자는 폭행 혐의를 인정하였고, 합의를 요청하고 있었음
<p> 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행 피해 관련 수술 이후 후유증에 대하여 병원 진료 및 치료 등 의료지원 • 피해에 대한 지원을 위해 경기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연계의뢰 • 피해자와 동행하여 재판 참여 및 법률상담 등 사법 지원
<p> 지원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위자 6개월 실형 선고(법정구속)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연계로 피해로 인한 수술비, 치료비와 생계비 등 금전 지원




<p>신고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가 지적장애인,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한 가정폭력(폭행) 신고
<p> 조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위자는 피해자에게 혼욕한다는 이유로 효자손(둔기) 및 손과 발로 여러 차례 구타하였고, 몸과 얼굴 부위에 멍이 들 정도의 상해를 입힘
<p> 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 분리 후 응급조치(쉼터 입소, 응급의료조치 등) 지원 • 경찰 신고 및 신뢰관계인 동석 지원 등 사법 지원 • 지자체 긴급 지원 및 기초생활수급 신청 등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 지역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연계의뢰를 통한 체험휴입주 등 거주 지원
<p> 지원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긴급생계비 및 기초생활수급 선정 완료 • 행위자 벌금 처분 • 체험휴을 통한 자립 지원 완료

2. 정서적 학대




<p>신고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가 지적장애인 이용인의 머리채를 잡아 쓰러트린 후 몸을 잡아 바닥에서 질질 끌고 가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는 내용의 신고접수
<p>조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 당시 CCTV 영상 확인 결과, 행위자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때리는 폭행을 하였음 · 또한, 독립보행이 가능한 피해자를 다른 이용인들과 종사자들이 보는 앞에서 팔을 잡고 강제로 끌고 가 바닥에 눕히고, 마스크를 던져주며 피해자의 머리를 밀치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 · 행위자도 자신의 행위를 모두 시인함
<p>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위자 고발 조치(장애인복지법 위반) · 관할 지자체에 시설조사 결과보고서를 발송하여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
<p>지원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위자 장애인복지법 위반 구약식(벌금형) 처분 · 거주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p>신고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가 지적장애인 이용인에게 체벌을 가하였다는 내용의 신고접수
<p>조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행위자, 관련자의 진술 및 CCTV 영상을 검토한 결과, 행위자는 거주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5분 동안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있도록 하였음 · 행위자는 피해자가 다른 거주인과 싸웠다는 이유로 훈육 차원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항변함
<p>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위자 고발 조치(장애인복지법 위반) · 관할 지자체에 시설조사 결과보고서를 발송하여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
<p>지원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위자 장애인복지법 위반 구약식(벌금형) 처분 · 거주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p>신고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거주시설을 이용하는 피해자가 시설 종사자에게 ‘타 종사자에게 폭행을 당했다’라고 이야기 하여 시설 내 인권지킴이단에 신고하였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신고접수
<p>  조사결과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와 타 이용인과의 말다툼이 있었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행위자를 때리기도 하고, 행위자의 팔꿈치가 피해자의 얼굴 안면 부위에 부딪히기도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 이 과정에서 행위자는 피해자에게 “교사를 때려요?”, “이럴 거면 나가서 혼자 사세요”라고 하며 피해자의 짐을 싸는 행위 및 피해자의 옷의 뒷덜미를 잡는 행위 등을 함 • 피해자가 얼굴 부위를 맞은 것은 장애인학대가 아닌 사고에 의한 우발적인 것으로 신체적 학대로 판단하지 않았으나, 행위자의 언행은 부적절하여 정서적 학대로 판단함
<p>  지원내용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 지자체 시설조사 결과보고서 공문 발송을 통한 행정처분 요청
<p>  지원결과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 지자체 행정지도(주의 조치) 처분 • 시설 내부규정에 따른 행위자 인사 조치(업무분장 변경 등)

3. 성적 학대(성희롱, 추행 등)




<p>신고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장애인 여성이 전 남자친구(행위자)로부터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여 조사하던 중 성폭력 피해 사실을 추가로 확인
<p> 조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위자(주범)는 자신의 친구(공범)와 함께 피해자를 숙박업소로 끌고 가 친구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으며, 이후 피해자와 친구가 성관계하도록 강요함 • 피해자는 과거에 행위자에게 폭행을 당한 적이 있었으며 자주 화를 내는 행위자가 무서워 행위자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음
<p> 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바라기센터 연계하여 임신중절수술 진행 및 태아 DNA 검사 실시 • 행위자 고발 조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장애인복지법 위반) • 피해자 경찰조사 시 신뢰관계인 동석 • 재판 모니터링 및 사법 지원(보호자에 대한 법률상담)
<p> 지원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위자(주범) 실형 5년, 행위자 친구(공범) 실형 3년 선고되어 법정구속




<p>신고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장애가 의심되는 여성이 지인으로부터 성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신고를 관할 행정복지센터로부터 접수
 <p>조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는 돈을 벌기 위해 행위자 A의 편의점에서 근무하며, 행위자 A가 제공한 집에 살았음. • 행위자 A는 자신의 집에 행위자 B를 데려와 피해자와 같은 방에서 생활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는 행위자 B와 함께 지내며 여러 차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다고 함 • 또한 행위자 A는 피해자의 급여를 관리해준다며 피해자의 급여를 착취하였다고 함
 <p>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학대피해장애인 쉼터로 응급 보호 • 성적 학대 피해 관련하여 행정복지센터의 신고로 입건되었으며 경제적 피해에 대하여 옹호 기관이 고발장을 제출함 • 피해자 경찰조사 시 신뢰관계인 동석 및 이동지원(총 4회) •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협조하여 경찰조사 참여 • 의료지원(거대세포증 수술 지원/치과 치료 지원) • 복지지원(지적장애 등록 지원) • 거주지원
 <p>지원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적 학대 관련 수사 종결(경제적 학대 관련 재수사 진행 중) • 2021년 11월 거대세포증 수술(의료비 지원) • 2021년 9월 지적장애 등록 • 2022년 4월 체험홈 입주




<p>신고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 이용시설에서 일자리 근로를 하는 지적장애인 여성에 대한 시설장의 성추행 신고
<p> 조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해자는 일을 알려준다고 하며 어깨동무를 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며, “가만히 있으면 여기서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였고, 피해자를 무릎에 앉히게 하는 등의 성추행 행위가 확인되었음
<p> 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바라기센터 및 경찰 신고 접수 및 조사 지원 및 재판 참여 모니터링 • 관할 교육청에 해당 시설 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 • 피해자 심리치료를 위해 심리상담소 안내 등 정보제공 • 피해에 대한 지원을 위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연계의뢰 • 소송구조 의뢰
<p> 지원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해자 3년 6개월(법정구속)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연계로 피해로 인한 수술비 등 치료비와 생계비 등 금전 지원 • 변호사 선임을 통한 사법 지원




<p>신고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장애인 피해자가 과거 7살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친인척에게 성폭행 피해를 받았다고 하며, 현재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나 해당 학대 피해로 자해를 하는 등 심리적 트라우마가 남아있어 도움을 요청하는 신고 접수
<p> 조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 시기가 오래되었고, 현재 행위자와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아님 • 피해자는 학대 피해로 인해 병원 정신과 진료를 받아 정신과 약을 복용한 적도 있었다고 하며, 효과는 없었고 약 복용이 싫다고 함
<p> 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심리발달지원센터 상담 연계의뢰
<p> 지원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회기 심리상담 진행

4. 경제적 착취(횡령, 노동착취 등)




<p>신고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위자가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소액결제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는 내용의 신고 접수
<p> 조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위자는 폭언을 일삼으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 예금인출을 진행하였고 약 300만원을 편취 또는 갈취하였음
<p> 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위자 고발 조치(사기, 공갈, 협박 등) • 피해자 경찰조사 시 신뢰관계인 동석 • 재판 모니터링 및 사법 지원(보호자에 대한 법률상담)
<p> 지원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위자 벌금형 선고

<p>신고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위자가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장기간 급여, 대출금, 보험금을 가져갔다는 내용의 신고 접수
<p> 조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위자는 장기간 수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욕설을 하였음. • 피해자는 행위자에 대한 공포심으로 인해 순응적인 태도를 보였고 행위자에게 종속되어 있었음 • 행위자는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고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판매하는 방법 등으로 약 3,0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
<p> 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위자 고발 조치(사기, 공갈,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 피해자 경찰조사 시 신뢰관계인 동석
<p> 지원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위자 도주하여 수사 중지 • 행위자에 대한 지명수배 조치됨







<p>신고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이웃으로부터 뇌병변 장애인 경제적 착취 신고
<p> 조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는 뇌병변 장애인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가해자와 동거하던 중 가해자가 피해자의 통장과 카드를 가지고 현금 인출, 물건 구매 등을 하여 약 800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함 • 신고 접수 당시 경찰 신고되어 수사 진행 중이었음
<p> 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조사 신뢰관계인 동석 지원 및 법률상담, 자료 확보 등 사법 지원 • 기초생활수급 신청, 활동지원사 신청 등 복지서비스 연계
<p> 지원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 수사 중 가해자와 합의로 피해 일부 회복 및 고소 취하 • 활동지원서비스 및 기초생활수급 선정

<p>신고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명의로 과도한 통신비가 납부되고 있다는 신고 접수
<p> 조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명의로 통신사의 많은 수의 회선(핸드폰 2대, 인터넷+TV 결합상품 3대 등)이 가입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요금을 납부하고 있었음
<p> 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의 중재: 가입 당시 작성한 가입신청서 확인 결과 자필서명과 상품 가입 시 충분한 안내 등으로 해당 대리점에 법률상 문제 제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음 • 피해자의 여러 상황(시각장애인, 고령)을 보았을 때 대리점 측의 과도한 상품 가입유도 등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리점 측도 문제를 인정하여 합의 중재를 지원함
<p> 지원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사용 회선(핸드폰 1대 인터넷+TV 2대) 해지 완료 및 해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약금 및 미납요금(약 100만 원)은 대리점 측에서 부담하고 현재 사용 중인 요금제를 피해자의 상황에 맞게 낮게 조정



<p>신고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 시 이용인 개인 금전관리와 관련하여 인권침해가 의심된다는 신고 접수
<p>  조사결과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개인 장애연금 등 사용 후 해당 시설 명의로 포인트를 적립하는 것이 확인됨 • 피해자 금전관리를 위해 위임장 등을 작성하였으나, 피해자의 지문 스캔본을 사용하여 시설 임의대로 변경 작성된 것이 확인됨 • 피해자 개인 금전으로 구매한 물품(의자 등)이 시설 공용 공간에서 다수의 이용자가 사용하도록 비치하는 것이 확인됨 • 시설에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물품구입을 피해자 장애연금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됨
<p>  지원내용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 지자체 시설조사 결과보고서 공문 발송을 통한 행정처분 요청
<p>  지원결과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 지자체 행정지도(시정 조치) 처분

5. 유기·방임

<p>신고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미등록장애인), 자(지적장애인)가 폐가에 살면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방임 의심 신고를 접수
<p> 조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위자(부)의 거주지에서 다소 멀리 떨어진 폐가에서 모자 둘만 살고 있었음 • 행위자의 건강 악화 및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모자에 대한 돌봄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폐가에서 악취가 나고 난방이 되지 않았으며 주거공간의 기능을 하지 못함(천장 내려앉음, 간이화장실 사용, 냉수를 끓여서 사용 등) • 모자의 위생 및 건강 상태도 매우 불량하였음
<p> 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조치(학대피해장애인 쉼터 분리) • 복지지원(모에 대한 장애 등록 지원/기초생활수급신청 지원) • 의료지원(코로나-19 백신 접종 등) • 거주지원(긴급주거지원 신청 지원)
<p> 지원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무한돌봄센터 등 일상생활 관련 자원 연계 등 사례지원 진행 중 • 2021년 8월 000주택 입주 후 11월 NH임대주택 입주 완료
<p>신고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적 학대 의심 신고에 의한 시설조사 진행 중,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에 의하여 해당 시설의 야간 시간 때 종사자가 배치되어있지 않음을 확인하여 인지 신고 접수함
<p> 조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종사자 면담과 관련 서류(업무분장 및 근무현황표 등) 검토 결과 야간 근무자가 없는 것이 확인됨 • 야간 근무자의 부재로 인하여 이용인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장애 유형에 맞는 서비스 제공이 지원되고 있지 않음
<p> 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 지자체 시설조사 결과보고서 공문 발송을 통한 행정처분 요청
<p> 지원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 지자체 행정지도(시정조치) 처분

부 록

1.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주요 업무 소개 및 현황
2. 경기도 내 인권 관련 기관 소개
3. 경기도 내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현황
4.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제도

1.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주요 업무 소개 및 현황

주요 업무 소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학대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권익옹호 목적으로 2017. 1. 1.부터 설치·운영되는 법적기관으로 「장애인복지법」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음.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장애인복지법 제59조11)

학대피해장애인의 발견 및 피해회복지원, 장애인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전문기관 설치(중앙 1개 기관, 지역 18개 기관)

장애인학대예방과 방지의 의무(장애인복지법 제59조10)

장애인학대신고체계 구축운영

장애인학대신고전화 1644-8295(전국공통)

사후관리(장애인복지법 제59조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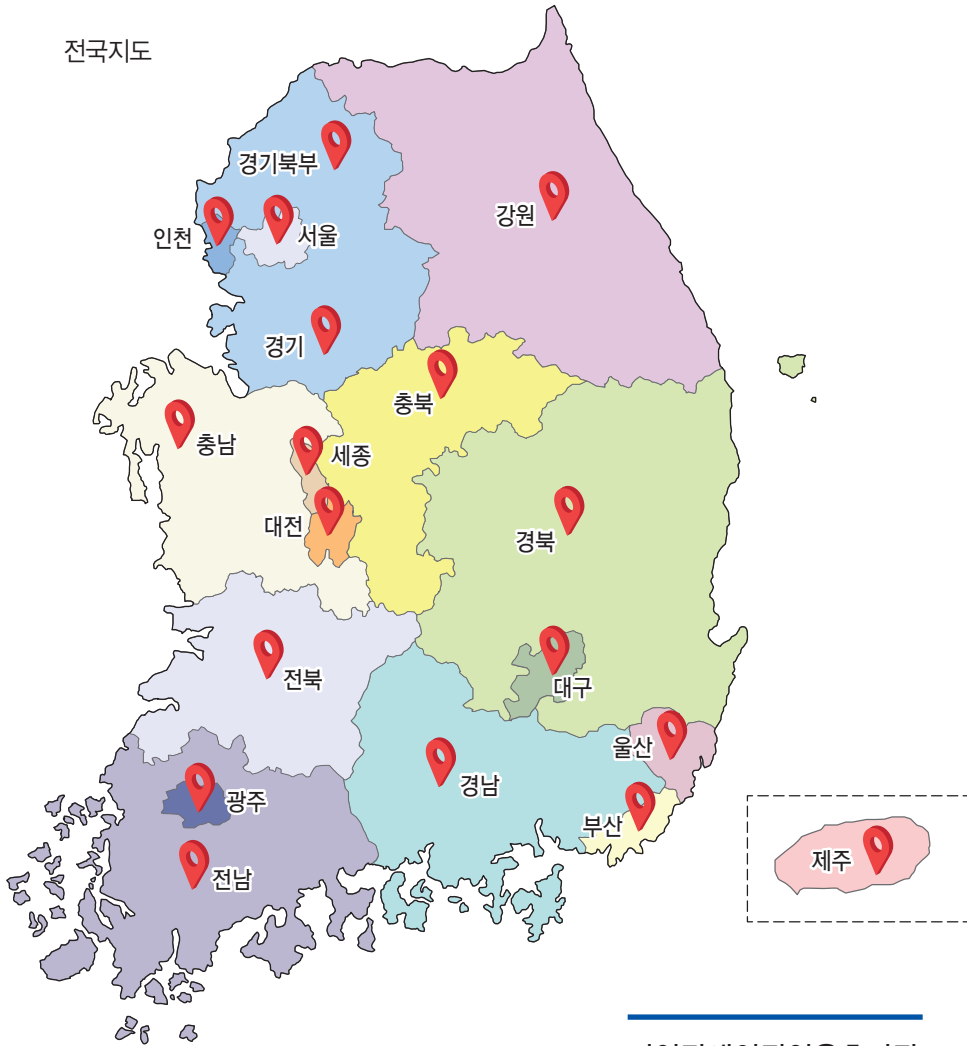
사례종결 후 방문·전화상담 등을 통해 피행장애인의 안전확보 및 장애인학대의 등을 위한 지원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연구·프로그램 개발, 지역기관 지원 등을 담당,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개별 학대 사건에 대한 지원을 실시



구분	주요 업무
<p>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지원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능력개발 •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정책의 개발 •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및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장애인학대 관련 통계의 생산 및 제공 • 장애인권익옹호에 관한 국제교류
<p>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 피해장애인 보호 및 피해회복 •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 • 장애인학대 사건 조사 현황 및 결과 등에 관한 정보제공 요청 등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요청에 따른 업무

현황





기관명	전화	주소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02-6591-1790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22길 21, 선유도코오롱디지털타워 1412호
서울장애인권익옹호기관	02-3453-9527	서울 강남구 도곡로 416 서울시립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 6층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051-715-8295	부산 연제구 법원로16번길 10 금곡빌딩 6층
대구장애인권익옹호기관	053-716-8295	대구 동구 동부로22길 2 서한코보스카운티 403호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032-425-0900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69, 르네상스타워 1801호
광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062-716-1633	광주 서구 상무대로 719 나라빌딩 2층
대전장애인권익옹호기관	042-631-5667	대전 동구 계족로 499 루루빌딩 3층
울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052-260-8295	울산 남구 중앙로 311 연세H타워 2층
세종장애인권익옹호기관	044-905-8295	세종 한누리대로 2107 보람종합복지센터 1층
경기장애인권익옹호기관	031-287-1134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130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208호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031-851-1007	경기 의정부시 오목로 255번 길 140 성산타워 301호
강원장애인권익옹호기관	033-264-8296	강원 춘천시 퇴계로 199 경림빌딩 2층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043-287-8295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1063번길 61-54 라네팡스타워 303호
충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041-551-8295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56 천안법조플라자 301호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063-227-8295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11-10 경희궁빌딩 5층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061-285-8298	전남 목포시 영산로 633 힐링타워 2층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054-282-8295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길 4-5
경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055-603-8295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85 리제스타워 210호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064-900-9695	제주 제주시 청귤로5길 21, 1층

2. 경기도 내 인권 관련 기관 안내

기관명	유형	전화	주소
경기도 인권센터	경기도직영	031-8008-234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10층 인권센터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경기도직영	031-8030-4541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경기도직영	031-251-9898, 031-888-985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A동 3층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경기도직영	031-8008-5555	
경기도 예술인상담센터	공기관대행	031-231-0870, 088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 경기상상캠퍼스 교육 1964동 2층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민간위탁	031-492-9347~8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 26, 4층

4.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제도

기본개요

◆ (목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인지 가능성이 높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4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예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의료기관 등) 의장과 종사자 등

◆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

◆ (내용)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의 옹호기관(1644-8295) 또는 수사기관(112)에 신고하여야 함

신고방법

누구든지 장애인학대를 알게 되면 장애인학대 신고번호(1644-8295)로 신고할 수 있음

전국 18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신고를 받으며, 신고자와 가까운 위치의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사례를 담당함

전화 외에도 홈페이지·전자우편을 이용한 신고, 직접 기관을 방문하는 방문 신고 등이 가능하며, 2021년부터는 청각·언어장애인이 학대를 받았을 때 문자(SMS)와 카카오톡으로 신고할 수 있음

신고 불이행 시 제재

◆ (과태료)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90조 제3항 3의 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별표 5]

신고자 보호 조치

◆ (내용)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하여 신고자 보호(법 제59조의6)

신고의무자 교육 개요

◆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의 6

◆ (교육대상)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

◆ (교육내용) ①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③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④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6 제1항

◆ (교육방법)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

- (교육콘텐츠)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과정 및 중앙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발간자료**나 유튜브 채널 동영상 활용 등

* 수강사이트(<https://www.gseek.kr>)

** 홈페이지(www.naapd.or.kr) ⇨ 정보 ⇨ 발간자료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 (문의) 경기도 평생학습지원센터(☎ 1600-0999),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02-6951-1790),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031-287-1134),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031-851-1007)

교육실시 및 교육 포함 여부 결과 제출

◆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6항 및 제7항

- ◆ (내용) ①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실시 여부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②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내용 포함 여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결과 제출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신고의무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시설 등을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장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련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 ①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동법 제59조의11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사회복지무요원을 포함한다)
2. 제32조의4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하는 자와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3. 「의료법」 제2조 제1항의 의료인 및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의료기사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응급구조사
6. 「119구급·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 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 교직원
9.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0.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1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12.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7.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6호의 청소년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20.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 신청의 조사를 하는 자
 22.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⑦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의5(불이익 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게 장애인학대범죄 신고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분 상실의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 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을 통한 임금, 상여금 등의 차별적 지급
5. 교육·훈련 등 자기 계발 기회의 박탈 및 예산·인력 등에 대한 업무상 제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근무 조건의 차별적 조치
6. 요주의 대상자 명단의 작성·공개, 집단 따돌림 및 폭행·폭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적·신체적 위해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조사 및 그 결과의 공표

제59조의6(장애인학대범죄 신고인에 대한 보호 조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제8조(인적 사항의 공개 금지),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제10조(영상물 촬영), 제11조(증인 소환 및 신문의 특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 제13조(신변안전조치)

2021 경기도 장애인 학대·차별 현황보고서

인쇄일	2022년 07월
발행일	2022년 07월
발행인	경기도
편집인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송남영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박현희
편집위원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최승호, 정한별, 방대욱)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백주현, 이나영)
발행기관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Tel. 031-8008-4336)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Tel. 031-287-1134)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Tel. 031-851-1007)
인쇄	블루애드(02-6082-7076)

